제356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2018년2월2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안
- 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 6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신용현ㆍ
	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6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
	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6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6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6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6
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8
1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8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박덕흠·
	원유철·강석호·김광림·박성중·이학재·주호영·박맹우·김재원·경대수·이철우·김정재
	의원 발의)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9
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김민기·
	조승래・신경민・정춘숙・정성호・민홍철・윤소하・원혜영・손혜원・소병훈・김정우・송옥주・
	박정 의원 발의)9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 ···· 9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9
1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용득ㆍ신경민ㆍ
	민홍철・오영훈・고용진・김민기・송옥주・신동근・심재권 의원 발의)9
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함진규·권석창·조훈현·이종배·
	이양수·문진국·김진태·김명연·이채익 의원 발의)9
2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이학영ㆍ이동섭ㆍ민병두ㆍ
	김종민 · 김해영 · 윤호중 · 안민석 · 이춘석 · 유동수 · 안규백 · 정종섭 · 설훈 · 신창현 · 이인영 ·
	김경협 의원 발의)
22.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0.4	정갑윤・도종환・정인화・윤영일・안규백・손혜원・윤후덕・이언주・박주선 의원 발의) … 11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11
2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11
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0	세물) 1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
28.	4·10세월오삼차 피해구세 및 시천 등을 위한 특별법 월구개성법률한(대한)(동남국산식품해당 수산위원장 제출) ···································
29.	구산위원경 세물)
<i>2</i> 9.	제출)
30.	제 = 7 ··································
50.	김해영·이찬열·어기구·김병관·김철민·신경민 의원 발의)14
3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σ1.	(김광수·김중로·황주홍·최도자·이동섭·박주현·천정배·김삼화·김관영·유성엽·김종회
	의원 발의)
32.	다는 들어 보다 하는 무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
o_{a} .	

	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14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	•
	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14
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4
3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함진규·김도읍·이현재	•
	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	14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
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
3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
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곽대훈	
	송희경·박성중·정태옥·김규환·김승희·유재중·최연혜 의원 발의)	16
4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
4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
4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
4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	
	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17
4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윤소하	
	기동민・양승조・오제세・권미혁・이학영・인재근・박홍근・이원욱・백혜련・박광온 의	원
	발의)	
4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
4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8
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
5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이완영·조배숙·이찬열	
	최인호·박재호·김현권·김현아·이개호·임종성 의원 발의)	19
5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정우	. •
	신창현ㆍ설훈ㆍ송옥주ㆍ김경협ㆍ서영교ㆍ안호영ㆍ이찬열ㆍ조승래 의원 발의)	20
5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김정우ㆍ주승용ㆍ한정애ㆍ신창현ㆍ윤관석ㆍ임종성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원욱 의원 발의)	20
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0
5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0
58.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박홍근·민홍철	
	윤관석·정성호·이춘석·이원욱·안호영·박찬우·윤호중·백재현 의원 발의)	21
5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종구・정양석・김현아・김세연	
	황주홍·이학재·이완영·정병국·김영우 의원 발의)	21
6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2
6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2
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22
6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22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24

(14시18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2월 8일 송기석 의원과 박준영 의원이, 2월 13일 박찬우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각각 퇴 직되었습니다.

2월 20일 김동철 대표의원으로부터 바른미래당 이 소속 의원 30인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9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 며, 정부로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세균**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 는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개의하지 못하다가 가 까스로 우여곡절 끝에 오늘 66건의 법안을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 각합니다.

28일 하루 본회의가 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는 28일 전까지 최대한 법안 심의 에 노력을 해 주셔서 28일에는 좀 더 많은 법안 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상임위원회 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김관영·민병두·제윤경·김동철· 조배숙 · 이태규 · 이종걸 · 송희경 · 이동섭 · 주승용·박선숙 의원 발의)

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4시21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유통업에 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2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 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정재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 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정재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KTX 출발지이자 남북 평화의 길목이 될 고양 시 출신 정재호 의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 한 4건의 법 률안, 첫 번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두 번째 김 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세 번째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네 번째 이중상환 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1인, 기권 3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1인, 기권 3인으로서 전 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기권 4인으로서 이 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 · 신용현 · 김광수 · 박준영 · 김삼화 · 김경진 · 황주홍 · 이동섭 · 김종회 · 이언주 의원 발의)

-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 · 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 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 전혜숙 의원 발의)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 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 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시27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5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제대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9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인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유의동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7건의 법률안 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무상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인 양여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상으로 양여하

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인식을 감안하여 결 혼을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 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을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 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찬대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각각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무상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 인 양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법 률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규 정을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고, 범죄의 중대성 과 변화한 사회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을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적 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유의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인, 기권 7인 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국 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0인, 기권 6인으로서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4인으로서 제 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2인, 기권 5인으로서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3인, 기권 9인으로서 참 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 위원장 제출)
- **1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 위원장 제출)
-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박덕흠· 원유철·강석호·김광림·박성중·이학재· 주호영·박맹우·김재원·경대수·이철우· 김정재 의원 발의)

(14시35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2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추경호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의 자유한국 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 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 김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위탁 개발을 통해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병국 의원, 김광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임명직 금융통화위원이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 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사를 추가하는 내 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조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국 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한 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02인, 반대 6인, 기권 19 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4시39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5항 방송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고용진 위원 나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고용진 존경 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위원입니 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추혜선 의원, 김정재 의원, 김성태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사업자 등 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 속 방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KBS 결산

서 등의 제출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5월 31일 로 앞당기며 홈쇼핑 사업자가 허위ㆍ과장 등의 내용으로 제재조치 등을 받은 경우 그 결정사항 전문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제품 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16 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 김민기 · 조승래 · 신경민 · 정춘숙 · 정성호 · 민홍철・윤소하・원혜영・손혜원・소병훈・ 김정우·송옥주·박정 의원 발의)
-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황주홍 · 김종회 · 박광온 · 안규백 · 신경민 · 이춘석·김해영·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
-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용득· 신경민 · 민홍철 · 오영훈 · 고용진 · 김민기 · 송옥주·신동근·심재권 의원 발의)
- 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함진규·권석창·조훈현· 이종배 · 이양수 · 문진국 · 김진태 · 김명연 · 이채익 의원 발의)

(14시41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6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병욱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성남시 분당을 출신 김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직,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인 '가도'를 우리식 한자어인 '임시도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김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입니 다.

첫째,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 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한 법률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 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하여 통합된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인증제 의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를 입법 취지에 맞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김병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4인, 기권 7인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3인, 기권 8인으로서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19 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07인, 반대 4인, 기권 21 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2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이학영ㆍ이동섭ㆍ 민병두 · 김종민 · 김해영 · 윤호중 · 안민석 · 이춘석・유동수・안규백・정종섭・설훈・ 신창현ㆍ이인영ㆍ김경협 의원 발의)
- 2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원혜영·정갑윤·도종환·정인화·윤영일· 안규백 · 손혜원 · 윤후덕 · 이언주 · 박주선 의원 발의)
-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2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 통일위원장 제출)

(14시48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1항 영해 및 접속수 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해외이주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통일 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경협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김경협** 존경하는 국회의 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평 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 외국선박의 승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사업장 이전 등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으로, 신고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 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 산을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 육하는 학교에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 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홍익표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국회 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남북관계 발전 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하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경미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 로 주요 내용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 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통일 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ㆍ지 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 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4인 으로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98인, 반대 5인, 기권 21 인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2인, 기권 27 인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4시56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6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재정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이재정 존경하는 국회의 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안전 관 리자 및 소방안전 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 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박정 의원이 대표발 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산업의 표준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추진 실적 등을 소방청장 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사업을 전문지식 과 경험을 가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 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 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 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6인, 반대 2인, 기권 8인 으로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6인

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8.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제출)

(15시00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8항 4·16세월호참 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연근해어업의 구 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권 위원 나 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김현권** 존경 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입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월호 침 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선체 인 양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업선진화 사업 및 대체어장 출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에 포함하여 어구 를 감척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 안 · 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

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92인, 반대 4인, 기권 25 인으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2인, 기권 6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박정·김병욱·윤후덕·강창일·김해영·이찬열·어기구·김병관·김철민·신경민 의원 발의)
- 3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김광수·김중로·황주홍·최도자·이동섭· 박주현·천정배·김삼화·김관영·유성엽· 김종회 의원 발의)
- 3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 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 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 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 **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함진규·김도읍· 이현재·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 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박정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위원입 니다.

지금부터 산자중기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를 현행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서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개발제품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시험연구 원의 부당한 성능인증 업무 지연에 대해 지정취 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의 임직원, 벤처기업 등의 대표나 임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안으로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

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부칙의 면제시한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창업하는 자도 부담 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운동에서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의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하고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일 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장 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기권 3인으로서 산 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기권 4인으로서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기권 4인으로서 중 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6인, 반대 3인, 기권 4인 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원장 제출)

- **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원장 제출)
- 3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 곽대훈·송희경·박성중·정태옥·김규환· 김승희·유재중·최연혜 의원 발의)

(15시11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36항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노 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 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 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정춘숙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서 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동민 의원, 남인순 의원, 박광온 의원, 오제세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연계 등을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진복 의원,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 상금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영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 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기타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5인 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5인으로서 노 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2인, 기권 6인으로서 모 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사 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 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워장 제출)
- 4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 황주홍 · 이찬열 · 송옥주 · 조정식 · 변재일 · 박남춘 · 정재호 · 김영진 의원 발의)
- 4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 춘숙 · 윤소하 · 기동민 · 양승조 · 오제세 · 권미혁 · 이학영 · 인재근 · 박홍근 · 이원욱 · 백혜련 · 박광온 의원 발의)
- 4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원장 제출)

(15시17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41항 의료기기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공공보건의 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한 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45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전혜숙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전혜숙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입니 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기기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 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 된 자료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0인, 반대 2인, 기권 3인 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반대 2인, 기권 2인 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5인 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0인, 기권 20 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6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8.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15시24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47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성일종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성일종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산 태안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위원입 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축

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본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구매 실 적을 공표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이들 의 직업 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5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님 객석 단말기 및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 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중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식 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2인, 기권 6인으로서 식 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수 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축 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이완영·조배숙·이찬열· 최인호·박재호·김현권·김현아·이개호· 임종성 의원 발의)

- 5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 영·김정우·신창현·설훈·송옥주·김경협· 서영교·안호영·이찬열·조승래 의원 발의)
- 5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회 의원 대표 발의)(전현회·김정우·주승용·한정애·신 창현·윤관석·임종성·안규백·안호영· 이원욱 의원 발의)
- **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교통위원장 제출)

(15시31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53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55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주 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주 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정종섭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鄭宗燮**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 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 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당연퇴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 택단지 밖에 위치한 토지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토지 편입 요건 등을 명시하고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 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사회적기업 등 단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원욱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 감리비를 사전 예치 받아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경우에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와 관련한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영일 의원과 이원욱 의원,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후분양 주택사업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경우 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 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 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 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3인 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5인, 기권 25 인으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2으로서 주 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주 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8.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박홍근· 민홍철 · 윤관석 · 정성호 · 이춘석 · 이원욱 ·

안호영·박찬우·윤호중·백재현 의원 발의)

5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주호영·이종구·정양석·김현아·김 세연 · 황주홍 · 이학재 · 이완영 · 정병국 · 김영우 의원 발의)

(15시38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58항 철도건설법 일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윤영일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윤영일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의 땅끝 해남, 청정해역의 수도 완도, 신 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진도 출신 민주평화당 윤 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한 철도건설법 일 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을 '철도의 건설 및 시 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철도시설 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며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긴급 점 검, 정밀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 로 철도시설관리자의 정기점검 · 정밀진단이 부실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 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 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8인, 기권 5인으로서 철 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6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 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6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 가족위원장 제출)

(15시42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60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6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남인순 위원장 나오셔서 7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 니다.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하고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가 제출하고 전해철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3건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 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결혼중개 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본 의원과 나경원 의원 · 신용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양성평등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하였으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 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6인, 기권 5인으로서 청 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4인 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인, 기권 12 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 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선거 광역의 원 예비후보 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아직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안을 처리해 주지 못해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참 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장이나 원내대표단 이 이 문제를 늦어도 오늘까지는 처리하기 위해 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28일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이 처리가 되어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 질이 없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1분)

○**의장 정세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 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정세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이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0분만 할애를 하시면 5분자유발언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10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북 군산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 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하 겠다고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발표 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간 지역사회가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 민관이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차 사 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 무책임하게 공장 폐쇄를 언급하는 것에 분노의 감정까지 솟아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년간 소수주주권이라는 비 토권 하나만 믿고 한국지엠의 부실의 골이 깊어 지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감시를 하지 못했습니 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의 경영 상 문제점과 위기상황 도래에 대한 국회의 지적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제 한국지 엠은 일자리를 볼모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 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배리 앵글 지엠 부사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앵글 부사장은 한국지엠이 비용이 높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한국지엠만 특별히 비용구조가 높다면 이것은지엠의 원가관리 실패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한국지엠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실사를 통해 고비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엠 본사의 차입금에 대한 과도한 이자, 고가의 부품 구입, 연구개발비의 본사 지급 등에 대해서 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 군산공장은 폐쇄하고 부평 및 창원 공장 중심으로 한국지엠을 재편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이런 경영개선계획은 수용돼서는 안 됩니다. 군산공장 존속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영개선계획이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 철저조사, 후 지원방안의 투명한 논의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경제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적합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산과 전북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심어 주십시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 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지역경제의 앵커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정부 당국의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절실합니다.

새만금 지역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기업의 존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조성 등 전북 지역에서 가능한 모든 산업발전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 역시 하나의 해법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대한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과 고용 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지시, 기재부·산업 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하는 범정 부 차원의 TF 구성을 언급했습니다. 만시지탄이 지만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가 날 때까지 일관되게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지는 지역경제의 악재에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우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논리, 지역경제, 국가경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과 전북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군산 경제가 무너지면 전북이, 전북 경제가 무

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의 둑이 무너집니다. 한국 지엠의 위기가 어디 군산 · 부평 · 창원만의 문제 겠습니까?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를 막는 데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동구 출신의 민중당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중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김관영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엠 문제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지엠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초국적 자본, 지엠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 는 상황입니다. 한국지엠은 우리 정부와 상의도 없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 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장 군산공장 노동자와 협력사 직원 등 1만 5000여 명이 실직당하고 지 역경제가 쑥대밭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 다.

저의 지역구는 울산 동구입니다. 조선산업 위 기로 울산 동구에서도 조선업 노동자 2만 5000여 명이 실직당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아픔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대량해고의 아픔을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현 장 노동자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지엠 철수 선언이 노동 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지 충 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공장 폐쇄 결정 을 철회해야 합니다.

초국적 자본 뒤에 서 있는 미국 정부의 횡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지엠 의 군산공장 폐쇄가 자기 업적이라고 자랑했습니 다. 수많은 국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 역경제가 파탄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자기 업적으 로 치부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철강,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에 대 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수입규제를 강화하 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 정 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규범들조차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더 군다나 그토록 강조해 온 한미동맹의 실체를 고 스란히 반영한 결과물이 이것인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초국적 자본 지엠과 미국의 이러한 횡포를 어 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 언급한 바 있듯이 정부는 미국과 초국적 자본 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지엠의 경영상태를 제 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지 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도 경영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조차 못했습니 다. 한국지엠이 어떻게 경영되어 왔는지 노동조 합, 주주,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로 심각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지엠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은 정부의 책임 도 큽니다. 정부는 한국지엠이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로 회계장부를 제대로 보고받거나 감독하지 못했고 세무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순 전히 그들이 얘기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가능 했는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먼저 한국지엠의 경영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성과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조 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외국 자본이라고 해서 불투명한 경영을 묵인해 온 관 행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우리 국회는 지역사회와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의사결정이 특 정기업 독단에 맡겨지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 다. 유럽에서라면 기업 철수와 같은 중요한 결정 에는 당연히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러한 방향으로 최소한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외국자본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 이라 여기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한국지엠 사태를 계기로 외국자본에 대한 법 제 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미 국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책 에 무조건적 예스를 외쳐 온 건 아닌지 되돌아봐 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지엠과 미국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강 석 호

남 인 순

문 희 상

박 경 미

오 영 훈

원 혜 영

유 승 희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강 병 원

김 현 아

노 회 찬

민병두

염 동 열

우 원 식

유동수

이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석 진

나 경 워

문 진 국

민홍철

오 신 환

원 유 철

유 승 민

.....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길 부

김 현 권

노 웅 래

민경욱

여 상 규

우 상 호

위 성 곤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태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정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정 박 주 선 박홍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상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어 기 구 엄용수 안 호 영 양 승 조

유 은 혜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한 홍 윤 후 덕 윤 호 중 이 개 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석현 이수혁 이 양수 이용득 이 원 욱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임 이 자 후 인 재 근 임 종 성 이 장 정 숙 장 석 춘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혀 희 전 혜 숙 전 회 경 정갑유 정 병 국 정성호 정양석 정세균 정 우 택 정용기 정운천 정 유 섭 정 재 호 정태옥 정 진 석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채 이 배 진 선 미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홍 문 표 함 진 규 홍일 표 홍철호 황 주 홍 황 영 철 황 희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오 세 정

유기준

기권 의원(3인)

찬성 의원(214인)

박 재 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석호 경 대 수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권 미 혁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성동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수 김기선 김 경 진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병 관 김 상 훈 김 석 기 김성원 김성 태 김 상 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회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영 진 김용 태 김 정 재 김종민 김 정 우 김 종 대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병 석 박 순 자 박 범 계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용진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혀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형 훈 성 일 종 수 설 손 혜 송 기 헌 소병훈 워 송 석 준 송 영 길 옥 주 신 경 민 송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위성 곤 영 유 기 준 유 동 수 유 은 혜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후 덕 윤 호 중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양수 이용득 이석현 이 원 욱 이 장 우 이재정 이정현 이 주 영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훈 인 재 근 임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혜 전 재 수 전 현 희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병국 정성호 정세 균 정 양 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재호 정 진 석 정춘숙 정 태 옥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채 이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2인) 박성중 윤 한 홍 (김승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14인, 기권 의원 2인임)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기 동 민 김 경 진 권 칠 승 김 경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민 기 김 병 관 김 김 병 욱 김 병 기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세 연 김석기 김성원 성 김 태 승 회 김 수 민 김 순 례 김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재 경 김 정 우 김 김 정 재 김종 대 김 종 민 김종훈 김 중 로 김 진 태 진 표 김 철 민 김 김 학 용 김 한 정 한 표 김 해 영 김 김 현 아 나 경 김 현 권 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병두 민 홍 박 경 미 민 경 욱 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범 계 병 박 순 자 박 석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선 백 재 현 박 정 박 홍 근 변 재 일 서 형 백 혜 련 수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용 현 신 보 라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상 정 재 철 안 규 백 심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오세 정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 동 수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한 홍 윤 호 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용득 이 양 수 이 워 욱 이 장 우 이 재 정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해 차 이 현 재 이 학 영 이 헌 승 인 재 근 0 훈 임 이 자 임 종 성 전 해 철 장 석 춘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병 국

정세 균 정양석 정용기 정성호 정 우 택 정운천 정 유 섭 정 재 호 정태옥 정 진 석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채 이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3인) 곽 상 도 박성중 백 승 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7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고용진 곽 대 훈 권 미 혁 곽 상 도 권성동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원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한 표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주 선 박용진 박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변 재 일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소 병 훈 설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석 준 송옥주 신 경 민 신용 현 신 보 라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민 석 아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소 하 유 하 홍 유호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용득 이 원 욱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임 이 자 인 재 근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혀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병국 정 갑 윤 정성호 정세균 정 양 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재호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용 주호영 지 상 욱 진 선 미 채 이 배 진 옂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혜 선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황 희 기권 의원(4인) 강 효 상 김 경 진 김 종 민 백 재 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09인)

강 병 원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 칠 승 권성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동철 김 두 관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원 김성 찬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훈 김종대 김종민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학 용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노 웅 래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남 춘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순 자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성 일 종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민 석 심 재 철 안 규 백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유기준 유 의 동 유동수 유 은 혜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만 희 이 군 현 이 동 섭 이명수 이 수 혁 이 상 돈 이 석 현 이양수 이 언 주 이 용 득 이 원 욱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학 영 이 채 익 이 철 규 이철회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정 숙 전 해 철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재 호 정 운 천 정유섭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황 주 홍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반대 의원(2인) 위성 곤 이개호 기권 의원(7인) 박 성 중 안 상 수 여 상 규 윤 상 직

윤 영 석

이종구

최경환(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2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경 수 기 동 민 김 김 경 진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기 병 욱 김 병 관 김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용 김 재 경 김 태 김정우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대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학 용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남 인 순 노 회 찬 문 진 국 민 경 욱 병 두 민홍철 문 희 상 门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송 기 헌 성일종 손 혜 원 송 영 길 송 석 준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심 상 정 안 상 수 안 민 석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유 기 준 우 상 호 원 유 철 위 성 곤 유동수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유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유 재 옥 윤 한 홍 유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군 현 이석현 이 상 돈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 득 이 원 욱 이장우 이 재 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현 재 이 헌 승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0] 장 석 춘 전 재 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갑유 정병국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재 호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황 주 홍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희

기권 의원(1인)

곽 상 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김 현 권 나 경 원 노 웅 래 남 인 순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박 주 선 박 재 호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성일종 서 형 수 설 훈 소병훈 송 석 준 송 영 길 송 기 헌 송옥주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심 재 철 어 기 구 엄용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한 홍 윤 호 중 이 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군 현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 원 욱 이 재 정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인 재 근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임이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병국 정 갑 윤 정 양 석 정세균 정성호 정용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재호 정 진 석 정 태 옥 정 춘 숙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짓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인 호 최 유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기권 의원(5인)

박성중 이상돈 이장우 최경환(평) 하태경

(박경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1인, 기권 의원 5인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2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금 태 섭 권성동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병관 김 병 욱 김 민 기 김 병 기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 찬 김수민 김 순 례 김세연 김 영 호 김용 태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문 진 국 래 노 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병 석 박 범 계 박 선 숙 박성중 박 완 주 박 순 자 박 완 수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서 영 교 서 형 수 련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옥주 신 경 민 신보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제 세 오세정 오 신 환 오 영 훈 원 유 철 우 상 호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유 소 하 윤 재 옥 윤 한 홍 유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수 혁 이 만 희 이명수 이석현 이 양 수 이 용 득 이 원 욱 이장우 이재정 이종명 이정현 이종구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차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전재수 전 해 철 전 희 경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재 호 정진석 정춘숙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용 주호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기권 의원(4인) 장 제 원 성 일 종 정 태 옥 최경환(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2인)

강석 진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경 대 수 강 훈 식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원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학 용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광 온 민 병 두 박 경 ㅁ] 박 덕 흠 박 남 춘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선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주 민 박 주 선 박 박 재 호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설 송 영 길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보 라 신용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심 기 준 안 민 석 어 기 구 안 규 백 양 승 조 엄용수 여 상 규 오세 정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은 혜 유 재 중 유 승 희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윤 영 일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석현 이수혁 이 언 주 이 명 수 이용득 이 원 욱 이 장 우 이재정 이 정 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철규 이 학 영 이 해 차 이철희 이 춘 석 인 재 근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워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병 국 정 갑 윤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재 호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조경태 조 훈 현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5인) 박 대 출 신 창 현 안 호 영 최경환(평) 한 선 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광 수 김 경 진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원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나 경 원 김 현 권 남 인 순 문 진 국 노 웅 래 노회 찬 문 희 상 민홍철 박 경 미 민 경 욱 박 덕 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서 영 교 훈 소 병 훈 설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기 헌 신 경 민 신 보 라 신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 의 동 유 은 혜 유동수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한 홍 유 호 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석현 이 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 원 욱 이장우 이 재 정 이종구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학 영 이 춘 석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혀 재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성 호 정세 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진 석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용 주 호 영 영 진 선 미 진 채 이 배 천 정 배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9인)

김경수 민 병 두 박 맹 우 성일종 송 옥 주 신 창 현 이 수 혁 이 상 돈 최경환(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2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김 경 진 김 광 수 기 동 민 김경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무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정 우 김 김정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아 나 경 원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병두 민홍철 문 희 상 민 경 욱 박 덕 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맹 우 박 병 석 박 범 계 박 선 숙 박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서 형 수 백 혜 럱 서 영 교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옥 주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신 경 민 신 창 현 신 보 라 신 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여 상 규 어 기 구 엄용수 오 영 훈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동섭 이 만 희 이명수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 원 욱 이 장 우 이재정 이종구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현 재 이 헌 승 훈 이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병국 정세균 정양석 정 우 택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춘 숙 정 태 옥 정 재 호 정 진 석

조경태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승 래 주 승용 조 훈 현 주 호 영 진 선 미 채 이 배 천 정 배 진 영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기권 의원(2인)

이 상 돈 최경환(평)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0인)

강 길 부 강석호 강 병 원 강석 진 강 훈 식 강 창 일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두 관 김 도 읍 동 철 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 찬 김성원 세 연 김 수 민 김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 병 두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광 온 박 대 출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맹 우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선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정 박 주 선 박홍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후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창 현 신용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심 기 준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여 상 규 엄용수 오세 정 오 영 훈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성 엽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재 중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호 중 유 후 덕 이개호 이동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용주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 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 해 찬 이철규 이 춘 석 이 헌 승 이현재 훈 인 재 근 \circ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병 국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재 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호 영 주 승 용 진 선 미 짉 영 채 이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2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5인)

박 성 중

권 석 창

강석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권 미 혁 고용 진 곽 상 도 권 석 창 권 은 희 금 태 섭 권 성 동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동철 김 두 관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 찬 김석기 김성원 김성 태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호 김용 태 김 영 진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진 태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노회 참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홍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성일종 손 혜 원 송 석 준 소 병 훈 송 기 헌 송 옥 주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용 현 신 보 라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 은 혜 유동수 유성엽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유 소 하 윤 재 옥 유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명수 이 만 희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 용 득 이용주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병국 정성호 정세 균 정 양 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짓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인 호 추 경 호 추 혜 선 하태경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3인)

유기준 이 훈 최운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금 태 섭 김경수 김 경 협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세연 김성 찬 김성 태 김 수 민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용 태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민 김 종 회 김 진 태 김진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아 김 한 표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문 희 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중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선 숙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서 영 교 설 후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옥 주 송 석 준 송 영 길 신 동 근 신 창 현 신 보 라 신용 현 심기준 심 재 권 안 민 석 심 재 철 안 규 백 어 기 구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후 덕 이개호 윤 호 중 이명수 이 군 현 이 동 섭 이만회 이 상 돈 이양수 이석현 이수혁 이 언 주 이용득 이용주 이 워 욱 이 인 영 이종구 이 장 우 이정현 이종명 이 주 영 이진복 이종배 이 학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재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현 희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병 국 정세 균 정 양 석 정 성 호

정 우 택 정운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진석 정 태 옥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옂 천 정 배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표 창 원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6인)

김 병 관 김 종 훈 채 이 배 윤 소 하 최경환(평) 추 혜 선

기권 의원(20인)

권 미 혁 기 동 민 김 광 수 김 종 대 김 중 로 김 현 권 박 남 춘 노 회 찬 박 맹 우 송 기 헌 신 경 민 심 상 정 유 승 희 유 은 혜 이 재정 0] 훈 정용기 정춘숙 한 정 애 황 영 철 (권미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1인, 기권 의원 20인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10인)

강 병 원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고 용 진 곽 상 도 권미혁 권 석 창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두 관 김 경 협 김 동 철 김 규 환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세연 김성 찬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승 희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진 태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정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박 찬 대 백 재 현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설 훈 송옥주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양 승 조 엄용 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성 엽 유 승 희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재 옥 윤 후 덕 이개호 윤 호 중 이 군 혀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원 욱 이용득 이용주 이종구 이 인 영 이 장 우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 찬 열 이채익 이철규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임 종 성 이혜훈 0 훈 인 재 근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워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 용 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영 채 이 배 진 선 미 진 천 정 배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혜 선 하 태 경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1인)

이 주 영

기권 의원(16인)

권 은 희 김 광 수 권 성 동 김 기 선 김도 읍 김 영 호 김 현 권 김 현 아 박 성 중 유기준 이재정 이 현 재 전 해 철 전 희 경 정 우 택 표 창 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미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 찬 김성 태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김 영 우 영 진 김 영 호 승 희 김 김용 태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태 흠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문 진 국 남 인 순 노 회 찬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문 희 상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남 춘 박 맹 우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중 박선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서 영 교 설 훈 성일종 손 혜 원 소 병 훈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양 승 조 안 규 백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성엽 유 은 혜 유 승 희 유 의 동 유재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호 중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개호 이 만 희 이 군 현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혀 이 수 혁 이 언 주 이용득 이용주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정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회 이철규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장 제 원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성호 전 희 경 정 갑 윤 병 국 정 정세균 정 양 석 정 우 택

정 용 기

정운천 정 유 섭 정인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훈 현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짉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영 표 홍일 표 황 주 홍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7인) 곽 상 도 안 상 수 강 효 상 유 기 준 이양수 이종명 조 응 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3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석 창 권 은 희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종 회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회 찬 노 웅 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성 중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정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박 찬 대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손 혜 원 송 석 준 설 훈 송 기 헌 송 영 길 송옥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보라 신용 현 신 창 현 신 상 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우 상 호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소 하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양 수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 용 주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종구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인 재 근 임 이 자 0] 훈 장 제 원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석 춘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병 국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양 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인 화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짓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워 하 태 경 함 진 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황 희 기권 의원(8인)

김 태 흠 박 대 출 성일종 심 상 정 윤 상 직 임 종 성 정 태 옥 홍 문 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10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은 희 권성동 기 동 민 김경수 금 태 섭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동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원 김성 태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남 인 순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남 춘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완 수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서 영 교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기 헌 송옥주 신 창 현 신 동 근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기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의 동 윤 상 직 윤 상 현 유 소 하 윤 영 일 유 재 옥 유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만회 이 명 수 이 상 돈 이석혀 이수혁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춘 석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 훈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용 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 태 옥 정 춘 숙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 교 일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2인)

김 용 태 박 대 출 기권 의원(20인)

박성중 곽 대 훈 김성찬 신 보 라 심 재 철 유 승 희 유 재 중 신 상 진 이 양수 이 언 주 이장우 이 종 구 이 철 희 전 희 경 정진석 진 선 미 최 연 혜 추경호 한 선 교 황 영 철 (이언주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10인, 기권 의원 20인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07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상 훈 김 상 희 김 김석기 김 성 원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재 경 김 정 우 김 김 종 대 김 정 재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경 미 민 경 욱 민홍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선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주 민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백 재 현 박 찬 대 박 홍 근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설 소 병 훈 성 일 종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보 라 신용 현 신 동 근 신 상 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오 영 훈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성 엽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재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후 덕 이 개호 윤 소 하 윤 재 옥 이 군 현 이명수 이 동 섭 이 만 희 이상돈 이석현 이수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정 이 정 현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해 찬 이 혜 훈 이 학 영 0 훈 장 석 춘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전 현 희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병 국 정세 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재 호 정 춘 숙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주 승 용 지 상 욱 조 훈 현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 교 일 최인호 최도자 최 운 열 추 혜 선 표 창 원 홍 영 표 함 진 규 홍 문 표 홍일 표 황 홍 철 호 회 반대 의원(4인)

박 성 중 이 주 영 이 현 재 주 호 영 기권 의원(21인)

강석 진 곽 대 훈 권 은 희 김 도 읍 김성 찬 김 용 태 김 철 민 김 현 아 박 맹 우 윤 호 중 이 종 구 이 헌 승 전 희 경 임 종 성 장 제 원 정성호 최 연 혜 하태경 한 선 교 황 영 철 황 주 홍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25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권 미 혁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무성 김 병 기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진표 김 태 년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워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찬 대 정 백 혜 련 박 홍 근 백 재 현 서 영 교 손 혜 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송 석 준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옥 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규 백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상 호 워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기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소 하 윤 재 옥 윤 호 중 유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명수 이 석 혀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 인 영 이 원 욱 이장우 이정현 이 종 명 이종구 이종배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 양 석 정용기 정 운 천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조 경 태 정 태 옥 조 배 숙 조 승 래 조 훈 현 주 승용 주 호 영 조 응 천 지 상 욱 진 선 미 영 채 이 배 진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희

기권 의원(12인)

김병관 김용태 민홍철 박성중 신경민 이만희 이재정 이주영 이 훈 천정배 추경호 황주홍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9인)

강 병 원 강 창 일 강석 진 강석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석 창 권미혁 권 성 동 권 은 희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광수 김 관 영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무성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아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제 세 오세 정 오 신 환 우 워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승 희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유 재 중 유 은 혜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후 덕 이개호 윤 호 중 이명수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주 이용 득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훈 인 재 근 0]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희 경 정병국 정 갑 윤 정 동 영 정양석 정성호 정세 균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황 주 홍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1인)

박 성 중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0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진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은 희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희 김성 찬 김 삼 화 김성원 김수민 김 세 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종 대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진 태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대 출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재 호 박용진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려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성 일 종 설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신 상 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호 영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우 원 식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워 유 철 위 성 곤 유기준 유 동 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소 하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양수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워 욱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정 이정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혀 재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전 현 희 전 희 경 정 갑 윤 숙 정 동 영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용 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춘 숙 정 종 섭 정진석 정 태 옥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혜 표 창 원 한 선 교 선 한 정 애 홍 문 표 홍 영 표 함 진 규 황 주 홍 홍 일 표 황 영 철 황 회

반대 의원(1인)

박 성 중

기권 의원(3인)

훈 조 승 래 주호영 (강훈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20인, 기권 의원 3인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17인)

강 병 원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권 미 혁 강 훈 식 고 용 진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기 동 민 금 태 섭 김 경 협 김 관 영 광 수 김 규 환 김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상 훈 김 상 희 김 김석기 김성원 김 성 찬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태 김 재 경 김정우 김정재 김 종 민 김 종 대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철 민 김 진 태 김 학 용 김 해 영 김 태 년 김 한 표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 중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순 자 박용 진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정 박 주 현 백 승 주 박 찬 대 박 홍 근 백 혜 련 백재 현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후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옥 주 신 경 민 송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유 은 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소 하 유 재 옥 유 호 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석현 이양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 득 이용주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종 구 이종 이 주 영 이정 쳙 명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규 이철희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워 전 현 희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추 혜 선 최 운 열 최인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황 영 철 황 주 홍 홍일 표 홧 회

반대 의원(1인)

곽 대 훈

기권 의원(8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198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석 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도 읍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동철 김 두 관 김무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병 기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성원 김성 찬 김성태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훈 김종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주 박 순 자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설 소 병 훈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안 민 석 심 재 권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기구 양 승 조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우 워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유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 득 이용주 이 원 욱 이 주 영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현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학 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현재 인 재 근 0]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병국 정 양 석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문표 홍 영 표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5인)

김용태 박대출 이장우 전희경 주호영

기권 의원(21인)

곽 상 도 김 상 훈 김 태 년 나 경 원 박 성 중 신 상 진 심 재 철 엄용수 유 기 준 유 재 중 이 종 구 이 종 명 이종배 임이자 정 유 섭 정 태 옥 홍일 표 최 연 혜 추경호 조 경 태 황 영 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누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185인)

강 석 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권 미 혁 권 성 동 금 태 섭 권 석 창 권 은 희 김 경 협 기 동 민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병 기 김 상 희 김세연 김 수 민 김성원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훈 김종 대 김 종 민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민 경 욱 민 병 두 문 희 상 민홍철 박 광 온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병 석 박 범 계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주 민 박 재 호 박 주 선 박 정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동 근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창 현 신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안 민 석 심 재 권 안 규 백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 유 철 위 성 곤 유 승 민 유동수 유 성 엽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유 재 옥 윤 호 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동 섭 이명수 이 수 혁 이 석 현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 정 현 이 채 익 이철규 이 학 영 이철희 이 해 찬 이 헌 승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해 철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최인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문표 홍 영 표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12인)

곽 상 도 김 도 읍 김 용 태 박 성 중 신 상 진 이장우 이진복 이 현 재 추 경 호 장 석 춘 전 희 경 주 호 영 기권 의원(27인) 곽 대 훈 김 무 성 김 상 훈 김성 찬 김 정 재 박 대 출 백 승 주 심 재 철 안 상 수 유 기 준 엄용수 오세 정 유 재 중 이 군 현 이 만 희 이 상 돈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학 재 정양석 정 유 섭 정태옥 최 연 혜 조 경 태 홍 일 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17인)

강 병 원 강 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권 미 혁 곽 대 훈 권 석 창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동 철 김 규 환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병 관 김 민 기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성 원 김성 찬 김 김성 태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태 년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광 온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선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인 숙 박 완 주 박용진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정 박 지 워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설 소 병 훈 손 혜 송 기 헌 성일종 원 송옥주 신 동 근 송 석 준 신 경 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신 보 라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안 규 백 어 기 구 양 승 조 염 동 열 엄용수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유 상 현 유 소 하 유 영 일 유 재 옥 윤호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혀 이수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배 이 주 영 이 종 명 이 춘 석 이 진 복 이철규 이철희 이 학 영 이학재 이 해 찬 이 현 재 임 이 자 0] 후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장 석 춘 전 해 철 전 혜 숙 정병국 전 현 희 정양석 정성호 정세 균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조 훈 현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주 승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황 주 홍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희

반대 의원(2인)

권 은 희 이 헌 승

기권 의원(7인)

곽 상 도 백 승 주 이 채 익 전 희 경 주 호 영 정갑윤 추경호 (김상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7인, 기권 의원 7인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2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석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석 창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두 관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회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선 숙 박 순 자 박용진 박 인 숙 박 완 주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혀 박 홍 근 박 찬 대 백 재 현 박 지 원 백 혜 련 서 형 수 성일종 설 훈 송 기 헌 송 영 길 소 병 훈 송 석 준 신 경 민 송 옥 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민 석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우 원 식 오 제 세 원 유 철 위성 곤 유성엽 유 기 준 유동수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유 후 덕 윤 영 일 유 재 옥 유 호 중 이 만 희 이 개호 이 군 현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 용 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종구 이정현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전 재 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세균 정 양 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 혜 선 표 창 원

최 인 호

영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1인) 백 승 주 기권 의원(6인) 엄용수 곽 상 도 박성 중 이동섭 이종명 추경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192인)

강 병 원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권 미 혁 고용 진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세연 김성원 김 성 찬 김성 태 김수민 김 승 회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종 민 김 종 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희 상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성일종 설 송 영 길 소병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옥주 신 동 근 신 상 진 신 경 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세 정 우 워 식 원 유 철 오 신 환 오 제 세 위성 곤 유성엽 유기준 유동수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영 일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재 옥 윤 후 덕 이개호 윤 호 중 이명수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상 돈 이석현 이수혁 이 언 주 이 용 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현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전 재 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 세 균 정 운 천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조 배 숙 정 춘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영 진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함 진 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4인) 곽 상 도 이 종 구 정 양 석 정 태 옥 기권 의원(25인) 강 석 진 김 무 성 곽 대 훈 김 순 례 민 경 욱 박 대 출 박 완 수 백 승 주 송 석 준 심 재 철 안 상 수 엄용수 유재중 이종명 이진복 이 헌 승 이 혀 재 정 우 택 정 유 섭 전 희 경 주 호 영 조 경 태 최 연 혜 추 경 호 한 선 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2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경 협 김 규 환 김기선 김도 읍 김동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성원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남 인 순 김 한 표 김 현 권 노 웅 래 노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경욱 민병두 박 경 미 민홍철 박 대 출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지 원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소 병 훈 서 형 수 설 훈 송 영 길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옥주 신 동 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규 백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제 세 오 세 정 오 신 환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 동 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재 중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소 하 유 상 현 윤 영 일 유 재 옥 윤호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석현 이수혁 이 언 주 이 용 득 이 용 주 이용호 이 워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철규 이 학 영 이철희 이 춘 석 이학재 이 해 찬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희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태옥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하 태 경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6인)

성일종

정 갑 윤

신 경 민

이 상 돈

김 병 관

이 헌 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5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관 영 김 규 환 기 선 김 도 읍 김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선동 김 상 희 김 성 원 김성 찬 김 수 민 김 세 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회 김 종 훈 중 로 김 김 진 태 김 철 민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민 경 욱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주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정 박 주 혀 박 지 워 박 차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설 후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세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성 엽 유 의 동 유 승 민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용 주 이용 득 이용호 이 원 욱 이재정 이 인 영 정 혅 이 종 구 이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학 영 이채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해 차 이 헌 승 이 학 재 이 현 재 임 이 자 0]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전 재 수 전 해 철 장 병 완 장 정 숙 전 혜 숙 정 동 영 전 현 희 정 갑 윤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운천 정인화 정 재 호 정 유 섭 정 종 섭 정 춘 숙 정태옥 정 진 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훈 혀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영 진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2인)

유 승 희 전 희 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송 석 준

신 동 근

심 상 정

안 민 석

엄용수

송 영 길

신 상 진

심 재 권

안 상 수

염 동 열

송 옥 주

신용 현

심 재 철

안 호 영

오 세 정

신 경 민

심기준

안 규 백

양 승 조

오 제 세

찬성 의원(205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권 성 동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관 영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원 김 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박 광 온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병 석 박선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혀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손 혜 원 성일종 소 병 훈 송 기 헌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승 회 유성엽 유 승 민 유 재 중 윤 관 석 유 의 동 윤 상 현 유 영 일 유 재 옥 유 호 중 유 소 하 유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 진 복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임 이 자 임 종 성 인 재 근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혀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동 영 정 갑 윤 정병국 정성호 정세 균 정용기 정 유 섭 정 운 천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주 승용 조 경 태 조 승 래 조 훈 현 주호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채 이 배 최 운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철호 홍 문 표 황 영 철 황 회

반대 의원(1인)

민 경 욱

기권 의원(2인)

곽 상 도 박 재 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6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곽 대 훈 경 대 수 고용진 권 미 혁 곽 상 도 권 석 창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원 김 세 연 김성 찬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진 태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박 주 민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주 현 박지 원 박 찬 대 백 승 주 백 재 현 박 홍 근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설 손 혜 원 송 영 길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신 경 힏 신 동 근 신 상 진 신용 현 심 재 권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염 동 열 양 승 조 엄용수 오세 정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유 재 중 유 승 희 유 관 석 윤 상 현 유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워 욱 이 인 영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해 이 헌 승 이 현 재 찬 0]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 용 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훈 현 주 승용 주호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3인) 강 효 상 민 경 욱 이재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4인)

강 병 원 강 창 일 강 훈 식 강석 진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경 대 수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권 칠 승 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기선 김 동 철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김 병 욱 삼 화 김 상 훈 フ] 김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원 김성 찬 세 연 김 수 민 김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우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정 훈 김종 대 김 정 재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학 용 한 정 김 한 표 김 김 김 해 영 김 현 권 경 남 인 순 나 원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용진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지 원 박 홍 근 박 찬 대 백 승 주 백 혜 련 서 형 수 서 영 교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기 헌 송 옥 주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유 상 현 윤 소 하 윤 호 중 윤 영 일 윤 재 옥 유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명 수 이 상 돈 이석혀 이 수 혁 0 용 득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재 정 이정현 이 이 주 영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회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해 0] 이 헌 승 찬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운 천 정 유 섭 정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인 화 정 재 호

정춘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훈 현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진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 경 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선 교 한 정 애 홍 영 표 함 진 규 홍 문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4인) 강 길 부 강 효 상 민경욱 이 만 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강 효 상 경 대 수 고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원 김 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회 김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철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지 원 백 재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훈 서 영 교 서 형 수 설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안 호 영 엄용수 염 동 열 오 제 세 오 세 정 우 워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석 혀 이 원 욱 이 인 영 이용 득 이용호 이 재 정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진복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철희 이학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병국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용기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채 이 배 최 연 혜 영 천정배 최 운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4인)

곽 대 훈 권 칠 승 박 남 춘 정 동 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7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경 대 수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칠 승 기 동 민 금 태 섭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두 관 김기선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원 김성 찬 김세연 김수민 김 승 회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워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병 석 박 남 춘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선 숙 박 순 자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혀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서 영 교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제 세 유기준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유 소 하 윤 영 일 유 재 옥 유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석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수혁 이 언 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종구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희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circ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혜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 운 천 정 유 섭 정진석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춘숙 조경태 조 승 래 조 훈 현 주 승 용 주호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짓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 연 혜 최 운 열 표 창 원 추경호 추 혜 선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황 회

반대 의원(3인)

박덕흠 박맹우 홍철호

기권 의원(3인)

정 용 기 최 도 자 황 영 철 (김선동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7인, 기권 의원 3인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0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기선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원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호 김 영 우 김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종 민 김 종 회 김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남 인 순 원 노 회 찬 노 웅 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인 숙 박용진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정 박 주 현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성 일 종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심 재 철 안 상 수 아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유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혀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현 이 주 영 이 종 구 이 종 명 이종배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이 헌 승 이 장 병 완 임 종 성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병국 정성호 세 균 정 양 석 정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조 경 태 정 태 옥 조 승 래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반대 의원(1인) 이 혀 재 기권 의원(5인) 권 미 혁 김 한 표 박 대 출 전 희 경 추경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강 효 상 곽 상 도 권미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규 환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동 김성원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나 경 원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경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혀 박 찬 대 백 재 현 백 혜 련 박 홍 근 서 영 교 손 혜 원 서 형 수 소 병 훈 설 훈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용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심 상 정 아 규 백 아 민 석 안 상 수 아 호 영 양 승 조 엄용 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승 민 유 성 엽 유 승 희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호 중 윤 소 하 윤 영 일 유 재 옥 윤 후 덕 이 군 현 이 개 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수 혁 이석현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용 득 이 용 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재정 이 주 영 이진복 이채익 이종배 이 철 희 이 학 영 이 허 승 이 혀 재 인 재 근 0]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양 석 정 우 택 정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태 옥 정 춘 숙 조 훈 현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지 상 욱 짓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추경호 표 창 원 최 운 열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영 표 홍 문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4인)

백 승 주 곽 대 훈 이 상 돈 진 선 미 (이은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0인. 기권 의원 4인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3인)

강 병 원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고용 진 곽 상 도 권미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금 태 섭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원 김성 찬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영 우 김용 태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정 재 김종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문 희 상 문 진 국 민 경 욱 노회 찬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정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설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옥 주 송 석 준 신 경 민 신 상 진 신 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소 하 윤 후 덕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이개호 이명수 이 군 현 이 동 섭 이상돈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인영 이재정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진복 이종배 이채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인 재 근 이 헌 승 이현재 0 훈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종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정배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5인) 김 정 훈 김 중 로 박 완 주 윤 상 직 이 주 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승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3인, 기권 의원 5인임)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호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권 미 혁 고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동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도 읍 김 병 관 병 기 김 병 욱 김 민 기 김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동 김성원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정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나 경 원 노 웅 래 노 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문 진 국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 대출 박선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인 숙 박용진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정 박 주 현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성 일 종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석 준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심 재 철 안 상 수 아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재 옥 윤 호 중 유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혀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진복 0]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전 해 철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혜 숙 정병국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영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한 선 교 홍 영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홍일 표 황 희

기권 의원(1인)

정 우 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호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석 창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광 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규 화 김 동 철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무성 김민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원 김성 찬 김 세 연 김 영 우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승 희 김 영 호 김 정 훈 김용 태 김 정 재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박 광 온 민홍철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주 혀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서 형 수 백 혜 련 서 영 교 설 후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상 진 신 동 근 신용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심 상 정 아 규 백 아 민 석 안 상 수 아 호 영 양 승 조 엄용 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수혁 이양수 이석현 이 언 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인영 이 재 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희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재 호 정 춘 숙 정 태 옥 조 승 래 조 경 태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최 연 혜 채 이 배 천정배 최도자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1인)

박 주 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1인)

강 병 원 강 길 부 강석진 강석호 강 훈 식 강 창 일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금 태 섭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수 민 김 선 동 김성찬 김 세 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권 나 경 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지 원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상 진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심 재 권 심 재 철 심 상 정 아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수 혁 이 상 돈 이석현 이양수 이용득 이용주 이 언 주 이용호 이 워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채 익 이 학 영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정 숙 전재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 병 국 정 갑 윤 정 동 영 정양석 정 우 택 정성호 정세 균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희

반대 의원(2인)

김용태 김해영

기권 의원(2인)

강효상 추경호

(권미혁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1인, 기권 의원 2인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황

희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삼 화 김선 동 김세연 김 상 희 김성 찬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출 박 병 석 박 순 자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서 형 수 성일종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심 재 권 안 민 석 심 상 정 심 재 철 안 호 영 엄용수 안 상 수 양 승 조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원 혜 영 우 원 식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유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워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 종 명 이 주 영 이종배 이진복 이 채 익 이철희 이 학 영 이헌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병국 정성호 정양석 정세균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태 옥 정 진 석 정 춘 숙 조 경 태 주 광 덕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호영 주 승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반대 의원(2인)

권 성 동 김용 태

기권 의원(1인)

나 경 원

(박대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1인, 기권 의원 1인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2인)

강 석 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찬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영 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해 영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권 나 경 원 남인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순 자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정 박 주 혀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설 송 영 길 송옥주 송 석 준 신 경 민 신 동 근 신용 현 신 보 라 신 상 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워 식 워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승 민 유성엽 유 재 중 유 승 희 유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소 하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혀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 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임 이 자 0] 후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양석 정세균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진 선 미 진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황 회 홍 철 호

기권 의원(1인)

권성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2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기 동 민 금 태 섭 김경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두 관 김기선 김 동 철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선동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회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정 재 김 종 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현 박 박 주 선 정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 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희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 경 호
		한 선 교	
		홍 영 표	
홍 철 호	_		• –
반대 의원(1인)			
김 용 태			
기권 의원(5인)			
		김 철 민	이 춘 석
황 영 철	. 🧳 🗀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권미혁 곽 상 도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관 영 김 규 환 김기선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세연 김 선 동 김성찬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박 남 춘 민홍철 박경미 박 광 온 박 병 석 박 순 자 박선숙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정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지 워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서 영 교 서 형 수 성일종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영 길 송 석 준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민 석 안 호 영 염 동 열 양 승 조 우 워 식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원 혜 영 위성 곤 유 동 수 유 성 엽 유 재 중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호 중 유 영 일 유 후 덕 이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석혀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용주 이 원 욱 이 용 호 이 인 영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현 재 0] 이 헌 승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 양 석 정세균 정 우 택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승 래 조 훈 현 조 응 천 주 승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추 혜 선 추경호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철 호 황 회

반대 의원(10인)

권성동 김무성 김용태 박대출 신보라 심재철 이진복 함진규 홍일표 황영철

기권 의원(20인)

김 도 읍 김정재 김 해 영 나 경 원 박 완 수 안 상 수 엄용수 유 기 준 유 재 옥 이 군 혀 이재정 이종배 이 주 영 전 해 철 정 유 섭 조경태 주 광 덕 주 호 영 최 운 열 하태경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193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호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훈 김종 대 김 정 재 김종민 김 중 로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선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성일종 소 병 훈 설 손 혜 원 송옥주 송 석 준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오세 정 우 원 식 오 신 환 오 제 세 워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호 중 윤 후 덕 윤 소 하 윤 영 일 이개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석 현 이상돈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주 이 용 득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 채 익 이철희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0] 훈 인 재 근 장 병 완 장 정 숙 임 이 자 임 종 성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정갑유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 양 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천정배 채 이 배 최도자 최 운 열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16인)

곽 대 훈 강 효 상 곽 상 도 김 도 읍 김선 동 김용 태 백 승 주 신 상 진 이종구 엄용수 염 동 열 이동섭 전 해 철 이 현 재 추 경 호 홍일 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6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고 용 진 곽 상 도 권미혁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무성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병 기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동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승 희 김 영 호 김 영 진 김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종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선 정 박 주 현 박 홍 근 박지 원 박 찬 대 백 재 현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설 훈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 제 세 오세 정 오 신 환 우 원 식 원혜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재 옥 윤 소 하 윤 영 일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동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인영 이정미 이정현 이재정 이종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헌 승 이 현 재 장 병 완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우 택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운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종섭 정진석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진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철 호 홍일 표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2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8인)

정 태 옥

전 희 경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훈 식 강 효 상 경 대 수 곽 대 훈 고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병 관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찬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호 김 영 진 김 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 대 출 박 선 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정 박 주 선 박 재 호 박 박 주 현 박지 원 박 홍 근 박 찬 대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성일종 손 혜 원 설 훈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상 수 안 민 석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워 식 위혜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유 호 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석혀 이 수 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자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 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 경 호 표 창 원 추 혜 선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2인)

박 경 미 염 동 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2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동철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동 김성 찬 김세연 김수민 김 영 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혀 박 정 박 주 선 박 지 워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옥 주 송 석 준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상 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워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재 중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유 재 옥 유 호 중 유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동 섭 이 상 돈 이 수 혁 이양수 이석현 이용득 이용주 이 원 욱 이용호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진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희 경 정 동 영 정병국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추 경 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철호 홍 일 표 황 황 영 철 회 기권 의원(6인) 박 찬 대 6] 후 임 이 자 정 운 천 진 선 미 홍 문 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고 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병 관 김무성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찬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성중 박선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성일종 설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소 병 훈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상 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9인)

강석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고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금 태 섭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동철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 찬 김 선 동 김성원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용 태 김 정 재 김 영 진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한 표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성중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선 박 박 주 혀 박 지 원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훈 성일종 설 소 병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옥 주 훈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심기준 심 재 권 심 상 정 신 용 현 안 민 석 안 상 수 심 재 철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워 식 워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 동 수 유 성 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유 승 민 유 승 희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 언 주 이용득 이용주 이 양 수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정미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배 이 주 영 이 종 명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장 병 완 임 이 자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해 철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회 기권 의원(1인)

김 영 호

황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9인)

강 병 원 강 길 부 강 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고용 진 권성동 금 태 섭 권 은 희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원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노 회 찬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병 석 박 남 춘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용진 박 재 호 박 완 주 박인숙 박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지 원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박 찬 대 백 혜 련 서 영 교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우 원 식 오 신 환 오제세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호 중 윤 후 덕 윤 영 일 윤 재 옥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수 혁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양수 이 언 주 이 용 득 이 용 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현 이 종 구 이 정 미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학 영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현 재 훈 이학재 이 헌 승 이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병 국 정 갑 윤 정 동 영 정 우 택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 재 호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춘 숙 정 진 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훈 현 주 광 덕 조 응 천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채 이 배 진 영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2인)

안 민 석 정태옥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관 병 욱 김 삼 화 김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원 김성 찬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노회 찬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선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서 영 교 훈 성일종 려 설 손 금 주 손 혜 원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심기준 신 보 라 신 용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안 호 영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희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소 하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동섭 이 만 희 이 상 돈 이명수 이석혀 이수혁 이 언 주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 현 이종구 이 종 명 이 주 영 이 채 익 이종배 이진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현 희 전 희 경 정갑윤 정 동 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훈 현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광 덕 주호영 주 승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이배 천 정 배 최 운 열 최도자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하태경 한 선 교 함 진 규 홍문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반대 의원(1인)

박 성 중

기권 의원(4인)

강효상 곽대훈 이현재 최연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 찬 김 세 연 김성원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승 희 김 영 진 김용 태 김 영 호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선 숙 박 남 춘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주 민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성일종 소 병 훈 서 영 교 설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제 세 오 신 환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소 하 윤 후 덕 이 개 호 이동섭 이 군 현 이 만 회 이 명 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 정 혅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전 해 철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주 승용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추 혜 선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반대 의원(1인)

박 성 중

기권 의원(3인)

강효상 곽대훈 이종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17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동 철 김 두 관 김무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원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해 영 남 인 순 김 한 표 노 웅 래 문 희 상 노 회 찬 문 진 국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혀 박 지 워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송 옥 주 신 경 민 손 금 주 송 영 길 신 동 근 신용 현 심 상 정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염 동 열 오세 정 우 원 식 오 신 환 오 제 세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승 민 유 승 희 유 관 석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개호 윤 호 중 이 동 섭 이명수 이석현 이 수 혁 이 완 영 이용득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명 이채익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철회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0]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재수 전 해 철 정 병 국 전 현 회 전 혜 숙 정 갑 윤 정세 균 정 우 택 정운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태옥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주 광 덕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철호

반대 의원(15인)

강 효 상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성 동 김 도 읍 김성찬 김 승 희 김용 태 김 정 재 박성중 엄용수 신 상 진 이 만 희 이 헌 승 정양석

기권 의원(27인)

강 석 진 김기선 김 진 표 김 현 권 나 경 원 민 경 욱 박 대출 박 완 수 백 승 주 송 석 준 심 재 철 신 보 라 유성엽 원 혜 영 유 재 중 이 상 돈 이 언 주 이 종 구 이 현 재 전 회 경 정 동 영 정성호 주 호 영 최 연 혜 추경호 홍일 표 황 영 철

(나경원ㆍ이언주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4인, 기권 의원 27인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훈 식 강 창 일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김경수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원 김성 찬 김 석 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호 김 영 진 김용 태 김 정 재 김종 대 김 정 훈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민 경 욱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선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정 박 주 현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설 훈 성일종 손 금 주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옥 주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우 원 식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유 기 준 워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소 하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동섭 이 만 희 이명수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원 욱 이 인 영 이정미 이 종 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 채 익 이진복 이 춘 석 이 철 희 이 학 재 이 학 영 이 현 재 이 후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임 이 자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전 희 경 정 갑 윤 정병국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인 화 정운천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춘 숙 정진석 정태옥 조 응 천 조경태 조 승 래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하 태 경 추 혜 선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철 호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황 영 철

기권 의원(11인)

경 대 수 곽 상 도 권 은 희 김 승 희 김 태 흠 백 승 주 이 상 돈 이재정 이정현 이 헌 승 최 연 혜 (권성동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1인, 기권 의원 11인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호 강 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원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회 김 영 우 김 영 호 김 영 진 김 정 재 김 용 태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출 박 경 미 박 남 춘 박 순 자 박 병 석 박선숙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완 주 박용진 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정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설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성일종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송 석 준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염 동 열 양 승 조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호중 유 소 하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명수 이 만 희 이 상 돈 이석혀 이 양수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전 재 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병 국 정성호 정세균 정 양 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재 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최 도 자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훈

기권 의원(5인)

김 중 로 박 성 중 곽 대 훈 엄용수 한 선 교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8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은 희 권 성 동 권 칠 승 기 동 민 금 태 섭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원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회 김 종 훈 김 종 민 김 중 로 김 철 민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김 현 권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박 광 온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혀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훈 성일종 소 병 훈 설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옥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심기준 심 상 정 신 용 현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엄용수 양 승 조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혜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승 민 유 승 희 유성엽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재 옥 윤 호 중 윤 소 하 윤 영 일 유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동섭 이 석 현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수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미 이 정 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채 익 이 춘 석 이철희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0]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후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병국 정 동 영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운 천 정 유 섭 정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태 옥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짓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함 진 규 한 선 교 한 정 애 홍 익 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기권 의원(5인)

백 승 주 이 완 영 전 희 경 박 대 출 최 연 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6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고용 진 곽 상 도 권미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수 금 태 섭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병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원 김성 찬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승 희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김 해 영 노 웅 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선 숙 박 대출 박 병 석 박 성 중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순 자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 돈

투표 의원(218인)

백 승 주

찬성 의원(218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권미혁 곽 상 도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무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원 김성 태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재 김종 대 김 정 훈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진 태 김 진 표 김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나 경 원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 경 욱 박 경 미 문 희 상 민 홍 철 박 덕 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선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인 숙 박용진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정 박 주 현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설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염 동 열 엄용수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윤 관 석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유 후 덕 이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현 이정미 이 종 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 진 복 이 철 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헌 승 이 현 재 훈 인 재 근 \circ 장 병 완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전 재 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진석 정 재 호 정 춘 숙 정태옥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훈

영

채 이 배 천정배 최도자 최 연 혜 추경호 추 혜 선 최 운 열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한 선 교 함 진 규 홍문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6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경 대 수 고 용 진 곽 상 도 권 성 동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은 희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광 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두 관 김 무 성 김기선 김 도 읍 김민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원 김성 태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나 경 원 김 한 표 김 해 옂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 진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설 송 옥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기 준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엄용수 양 승 조 염 동 열 우 원 식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위성 곤 유동수 유 승 민 유성엽 유 재 중 유 승 희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은 재 이 완 영 이용 득 이 원 욱 이정미 이정현 이 인 영 이 재 정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훈 0]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병 국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성 호 정운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춘 숙 정태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영 천 정 배 진 선 미 진 채 이 배 최 연 혜 최 도 자 최 운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홍일 표

기권 의원(2인)

이종구 이 현 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3인)

박 대 출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고 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기 동 민 금 태 섭 김 경 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관 영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동 철 김민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석기 김 상 희 김선동 김성 태 김세연 김 수 민 김성원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훈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재 호 박 인 숙 박 정 박 지 원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훈 성 일 종 설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상 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우 원 식 오 제 세 원 혜 영 위 성 곤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재 옥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종 필 윤 후 덕 이 군 현 윤 호 중 이개호 이동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양수 이석현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철규 이 학 재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혀 재 후 인 재 근 이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조경태 정태옥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 경 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홍 익 표 한 정 애 홍 영 표 함 진 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기권 의원(2인)

이 헌 승 홍 문 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6인)

장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칠 승 기 동 민 권 은 희 금 태 섭 김 경 협 김 광 수 김경수 김 관 영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 태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종 민 김 종 회 김 김종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학 용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홍 철 박 경 미 민 박 대 출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정 박 주 혀 박지 워 박 홍 근 박 찬 대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송 석 준 송 옥 주 손 혜 원 송 영 길 신 동 근 신 경 민 신 상 진 신 보 라 신 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민 석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양 승 조 안 호 영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위 성 곤 유동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재 중 윤 상 직 유 승 희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 득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 쳙 이 종 구 이종 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철희 이 헌 승 이 현 재 0] 인 재 근 훈 임이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혜 숙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우 택 정 운 천 정 정 유 섭 정 종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훈 현 조 응 천 조 정 식 주 광 덕 지 상 욱 주 승 용 진 선 미 짓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철호 황 영 철 기권 의원(5인) 권 석 창 김무성 워 혜 영 최 연 혜 홍일 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5인)

강 병 원 강석호 강 창 일 강석 진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동 철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원 김성 태 김 수 민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박 광 온 민경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 병 석 박 남 춘 박 대 출 박 선 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성 일 종 설 후 소병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옥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심기준 신 상 진 신 용 현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심 재 권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염 동 열 엄용 수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회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종 필 윤 소 하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군 현 윤 호 중 이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석 혀 이 수 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원 욱 이 은 재 이인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학 영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임 이 자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동영 정성호 정세 균 정 양 석 정 우 택 정운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태옥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영 진 채 이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천 정 배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반대 의원(1인)

김 도 읍

기권 의원(4인)

곽 대 훈 박 완 수 이 용 득 홍일 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9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성동 권 석 창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동 철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 세 연 김성원 김성 태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정 재 김 정 훈 김 김 중 로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 태 년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노 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성 중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정 박 주 현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설 손 혜 원 송 영 길 송옥주 송 석 준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심 재 권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염 동 열 양 승 조 엄용수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 승 민 윤 상 직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소 하 유 상 현 윤 영 일 유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정미 이정 혀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장 병 완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동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인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춘숙 조 응 천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최 운 열 천정배 최 연 혜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기권 의원(3인)

김 현 권

유 성 엽

전 현 희

김 종 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0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관 영 광 수 김기선 김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병 기 김 병 욱 김 김 상 훈 상 희 김 삼 화 김 김 석 기 김성원 김 선 동 김성 태 김 세 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용 태 김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태 년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노 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경 미 광 온 박 남 춘 민 홍 철 박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정 박 주 선 박 주 혀 박 지 원 박 찬 대 박홍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설 후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송 석 준 손 혜 송 영 송 옥 주 원 길 신 동 근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심 재 철 염 동 열 엄용수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 동 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용 득 이 은 재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현 재 임이자 0]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전 재 수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혜 숙 정 병 국

정 동 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유 섭 정인화 정재호 정 종 섭 정태옥 정 진 석 정 춘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혀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 도 자 최연혜 최 운 열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영 표 홍 철 호 황 영 철

반대 의원(2인)

권 성 동 김 진 태

기권 의원(11인)

박성 중 백 승 주 아 민 석 윤 상 직 이 완 영 이 종 구 이종명 이 헌 승 인 재 근 조경태 홍일 표 (이현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4인, 기권 의원 11인임)

○출석 의원(27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두 관 김기선 김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병 관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 성 원 김성 찬 김 수 민 김성 태 김세연 김 영 진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춘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태 흠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민 경 욱 도 종 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광 온 민홍철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성 중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홍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설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상 직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소 하 윤 후 덕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석현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워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배 이 주 영 이 종 명 이 진 복 이 차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허 승 이 현 재 이혜훈 0 훈 장 병 완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병 국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양석 정세균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조 배 숙 조 승 래 조 경 태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지 상 욱 주 호 영 진 영 진 선 미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혜 선 하태경 추경호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1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성동 권칠승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 태 김 세 연 김성원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병 석 박성 중 박 범 계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용진 박 주 민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변 재 일 서 영 교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옥 주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철 심 기 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여 상 규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승 민 유 은 혜 윤 관 석 유 승 희 유 의 동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한 홍 윤 호 중 유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용득 이 원 욱 이 장 우 이재정 이종구 이 정 현 이 종 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현재 0]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병국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운 천 조 경 태 정 재 호 정 진 석 정 춘 숙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조 승 래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채 이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홍일 표 황 주 홍 홧 회

○산회 시 재석 의원(66인)

곽 대 훈 권 미 혁 강 길 부 강 창 일 김경수 김 관 영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수민 김 영 진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한 표 김 현 권 남 인 순 박 경 미 박 병 석 박 인 숙 노 웅 래 박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홍 근 정 서 영 교 성일종 백 재 현 소 병 훈 손 혜 원 신 동 근 신용 현 심기준 안 호 영 오세정 오 제 세 유동수 유 승 희 윤 관 석 윤 소 하 윤 영 일 이 동 섭 이 언 주 유 종 필 이 워 욱 이 은 권 이정현 이 종 걸 이 학 영 0 훈 전 재 수 전 희 경 정세 균 정 운 천 정 인 화 정 태 옥 조 승 래 지 상 욱 진 선 미 최도자 추 혜 선 하태경 홍 문 표

○청가 의원(13인)

김부겸 김성수 김성식 金成泰 김영주 김종석 박명재 송희경 유민봉 이상민 제윤경 추미애 홍의락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장 김 교 흥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연 김 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곤 김 상 부 장 외 11/ 강 경 화 통 일 부 장 관 명 균 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종 환 도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혅 미 김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홋 종 학

○출석 정부위원

국 가 보 훈 처 장	피	우	진
행 정 안 전 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	희	인
여성가족부차관	$\circ \rceil$	숙	진
공 정 거 래 위 원 장	김	상	조
방송통신위원장	\circ	효	성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보고사항】

○의원 퇴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송기석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대법원 형확정 판결	2018.
박준영	전라남도 영암군 무안군신안군	민주평화당	대법원 형확정 판결	2. 8.
박찬우	충청남도 천안시갑	자유한국당	대법원 형확정 판결	2018. 2. 13.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오세정	국민의당	2018. 2. 7.

○교섭단체 구성

바른미래당

(2018. 2. 19.)

○교섭단체대표의원 선임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월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2018. 2. 19.

○교섭단체 소속의원 명부 제출

교섭단체	소속의원	연월일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신용현 오세정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동섭	2018.
바른미래당	이상돈 이언주 이찬열 이태규	2. 19.
	이학재 이혜훈 장정숙 정병국	2. 19.
	정운천 주승용 지상욱 채이배	
	최도자 하태경	
	(이상 30인)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송기석	국민의당	당선무효 (대법원 확정판결)	2018. 2. 8.
이용호	국민의당	탈당	2018. 2. 12.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박찬우	자유한국당	당선무효 (대법원 확정판결)	2018. 2. 13.

○교섭단체 해체

국민의당

(2018, 2, 19.)

○의안 제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노회찬·이정미·김종대·추혜선· 심상정 · 윤소하 · 최도자 · 전재수 · 서형수 · 김종훈 • 박주현 • 정성호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지상욱·오신환·유승민·정태옥· 박찬우 · 하태경 · 김성찬 · 정병국 · 김성원 · 유의동·박명재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지상욱·오신환·유승민·정태옥· 박찬우 · 하태경 · 김성찬 · 정병국 · 김성원 · 유의동·박명재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지상욱·오신환·유승민·정태옥· 박찬우 · 하태경 · 김성찬 · 정병국 · 김성원 · 유의동·박명재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지상욱·오신환·유승민·정태옥· 박찬우 · 하태경 · 김성찬 · 정병국 · 김성원 · 유의동·박명재 의원 발의)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김종석·김승희·곽대훈·경대수· 윤한홍 · 정종섭 · 김학용 · 민경욱 · 송희경 · 정용기·김순례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지상욱·오신환·유승민·정태옥· 박찬우 · 하태경 · 김성찬 · 정병국 · 김성원 · 유의동·박명재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지상욱·오신환·유승민·정태옥· 박찬우·하태경·김성찬·정병국·김성원· 유의동·박명재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지상욱·오신환·유승민·정태옥· 박찬우·하태경·정병국·김성원·유의동· 박명재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박준영·윤영일·박지원·유성엽· 정동영·조배숙·이용주·김종회·정인화· 황주홍·장정숙·박주현·김광수·김경진· 천정배·장병완·최경환(평)·이상돈 의원 발의) 이상 10건 2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신상진·변재일·김경진·정갑윤·황주홍·김진태·나경원·김학용·원유철·정성호 의원 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권은희·장정숙·김동철·오세정· 김삼화·김수민·이찬열·채이배·최경환(평)· 김종회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오신환·하태경·유의동·홍철호· 김수민·권은희·김관영·김중로·정운천· 이동섭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2. 7. 최도자·이동섭·주승용·조배숙· 김광수·고용진·김승희·이찬열·신용현· 김삼화·김중로·오세정·정성호 의원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함진규·박덕흠·박맹우·김재원· 곽대훈·김성태·조훈현·이장우·이종배· 민경욱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이개호·위성곤·김철민·김현권· 인재근·추혜선·신창현·주승용·민홍철· 김정우·박완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문진국·경대수·정운천·김정재·

정갑윤·김선동·김현아·임이자·정진석· 김석기·이철규·여상규·이용득·김진태·

장석춘ㆍ신보라ㆍ이종명ㆍ김용태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한정애·김정우·박정·박찬대· 송옥주·신창현·원혜영·유동수·윤관석· 정성호·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문진국·주광덕·조경태·이용득· 김성찬·김순례·임이자·박성중·민경욱· 윤한홍·김승희·김석기·송옥주·김삼화· 성일종·김세연·장석춘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김용태·정양석·이종배·김재경· 김종석·문진국·김선동·이종명·정유섭· 강석진·박찬우·정태옥·주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8. 2. 7. 김삼화·김수민·신용현·최도자· 이용호·김동철·이동섭·권은희·김중로· 하태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8. 2. 7. 진선미·김현권·박찬대·원혜영· 표창원·신창현·민홍철·천정배·황주홍· 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 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윤재옥·곽상도·김성원·김승희· 성일종·신보라·이철규·장석춘·정유섭· 주광덕 의원 발의)

2월 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표창원·이개호·박완주·전재수· 서영교 · 김영호 · 임종성 · 소병훈 · 김철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관석 · 김두관 · 민병두 · 최도자 · 유승희 · 문희상 · 박정 · 신창현 · 홍의락·김정우·유동수·정성호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주광덕·김성원·신보라·윤재옥· 염동열・함진규・이철규・장석춘・정유섭・ 최교일 · 이은권 · 민경욱 · 이헌승 · 김한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주광덕·김성원·신보라·윤재옥· 염동열・함진규・이철규・장석춘・정유섭・ 최교일 · 이은권 · 민경욱 · 이헌승 · 김한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채이배·민병두·박선숙·김중로· 신용현 · 황주홍 · 김삼화 · 하태경 · 김경진 · 권은희 의원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2. 8. 정부 제출)

이상 2건 2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김경진·황주홍·노웅래·김해영· 박주선 · 김광수 · 오세정 · 김삼화 · 채이배 · 김수민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김수민·손금주·신용현·채이배· 김삼화・김경진・황주홍・김한표・김중로・ 이철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워회에 회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강석진·김상훈·김명연·주광덕· 김승희 · 송석준 · 김석기 · 박인숙 · 추경호 · 성일종·김순례·윤한홍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신창현·문희상·윤후덕·인재근·

소병훈・김종민・윤호중・이수혁・심재권・ 권칠승·박정·홍영표 의원 발의)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박경미·전해철·민홍철·심기준· 정성호・유은혜・신창현・황주홍・이철희・ 김정우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박경미·유은혜·신창현·안민석· 김민기 · 김영호 · 전재수 · 전해철 · 추미애 · 김성수 · 노웅래 · 김정우 · 민홍철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박경미·유은혜·신창현·안민석· 김민기 · 김영호 · 전재수 · 전해철 · 추미애 · 김성수 · 노웅래 · 김정우 · 민홍철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박명재·김석기·김정재·김광림· 원유철 · 정인화 · 박찬우 · 조경태 · 이찬열 · 김용태 · 이군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황희·정재호·고용진·권칠승· 김정우 · 김민기 · 최인호 · 어기구 · 김종민 · 박재호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이명수·권석창·홍문표·윤한홍· 김재원 · 박인숙 · 유민봉 · 김태흠 · 김성찬 · 유의동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조배숙·김광수·김삼화·김종회· 신용현ㆍ이용호ㆍ장병완ㆍ정동영ㆍ최도자ㆍ 홍의락 의원 발의)

지방의회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전현희·김영호·김정우·천정배· 김철민 · 안민석 · 김종민 · 윤관석 · 전해철 · 문희상 · 유승희 · 최인호 · 이수혁 · 송기헌 · 장병완 · 박정 · 유성엽 · 위성곤 · 노웅래 · 원혜영 · 이개호 · 신창현 · 유동수 · 이용주 · 민병두 · 김두관 · 심기준 · 김병욱 · 소병훈 ·

이훈·서영교·황희·박경미·이원욱· 강훈식·김해영·제윤경·우상호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강병원·백혜련·천정배·민병두· 박광온·신창현·박정·송옥주·이학영· 박찬대·김정우·유동수·정춘숙·윤관석· 김민기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김광수·조배숙·최도자·천정배· 김수민·오세정·김삼화·김동철·이용호· 유성엽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박경미·김영호·이수혁·김병욱·김정우·신창현·정성호·윤관석·심기준·원혜영·박병석·김민기·추미애 의원 발의) 이상 8건 2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박완주·이개호·고용진·박정· 이철희·김정우·노웅래·전혜숙·백혜련· 윤관석·박용진·심기준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주승용·최도자·장정숙·강창일· 박주선·김관영·윤영일·이용호·이개호· 정동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어기구·김한정·박정·송옥주· 문희상·위성곤·이개호·신창현·김경협· 김철민·홍영표·강훈식·권미혁·소병훈· 전재수·박재호·노웅래·기동민·김상희· 이수혁·임종성·전현희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최연혜·이채익·염동열·김정재· 정운천·유의동·김규환·이진복·윤한홍· 정갑윤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최연혜·이채익·염동열·김정재· 정운천·김규환·이진복·윤한홍·조훈현· 정갑윤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회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박인숙·유승민·지상욱·하태경· 김성원·김종회·권석창·여상규·심재철· 김학용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정춘숙·인재근·소병훈·김병욱· 김영호·유동수·윤소하·안규백·백혜련· 김상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강병원·신창현·백혜련·천정배· 민병두·박광온·박정·송옥주·이학영· 박찬대·유동수·정춘숙·윤관석·김민기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최도자·김관영·하태경·전혜숙· 정동영·주승용·이찬열·황주홍·최경환(평)· 권은희·김광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김영호·김현권·김영진·유동수· 신창현·박정·강병원·문희상·정재호· 최운열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강병원·백혜련·천정배·민병두· 박광온·신창현·박정·송옥주·이학영· 박찬대·정춘숙·윤관석·김민기 의원 발의) 2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박주민·최도자·추미애·박정· 오제세·윤관석·이철희·김영호·정인화· 신창현·소병훈·심기준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황희·정재호·고용진·권칠승· 김정우·김민기·최인호·어기구·김종민· 박재호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박명재·김석기·김정재·김광림· 원유철 · 정인화 · 박찬우 · 조경태 · 이찬열 · 김용태 · 김정훈 · 이군현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황희·정재호·고용진·권칠승· 김정우 · 김민기 · 최인호 · 어기구 · 김종민 · 박재호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황희·정재호·고용진·권칠승· 김정우・김민기・최인호・어기구・김종민・ 박재호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박경미·김영호·이수혁·김병욱· 김정우 · 신창현 · 정성호 · 윤관석 · 심기준 · 원혜영·박병석·김민기·추미애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박범계·김영호·신창현·송옥주· 정동영 · 김상희 · 유동수 · 고용진 · 김정우 · 추미애·박찬대·심기준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신용현·최도자·김삼화·김수민· 채이배 · 오세정 · 김광수 · 이동섭 · 김경진 · 이언주 의원 발의)

2월 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주광덕·김성원·신보라·윤재옥· 염동열 · 함진규 · 이철규 · 장석춘 · 정유섭 · 최교일 · 이은권 · 민경욱 · 이헌승 · 김한표 의원 발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2018. 2. 9. 김동철·권은희·김관영·김삼화· 김수민 · 김중로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이동섭・이언주・이용호・이찬열・이태규・ 주승용·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김관영·주승용·황주홍·최경환(평)· 민병두 · 최도자 · 이용호 · 강석진 · 이동섭 · 박선숙 의원 발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이와 관련된 인사발령,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은폐시도의혹 및 그 외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2018. 2. 9. 오신환·유승민·하태경·지상욱· 정병국・이학재・유의동・정운천・이태규・ 이언주 · 신용현 · 권은희 · 김관영 · 오세정 · 채이배·최도자·이혜훈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이학영·최인호·백혜련·남인순· 윤호중ㆍ이원욱ㆍ김해영ㆍ이재정ㆍ변재일ㆍ 이춘석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김해영·이찬열·윤호중·박용진· 박광온 · 박홍근 · 문희상 · 권칠승 · 최인호 · 조승래·전재수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이학영·최인호·백혜련·남인순· 윤호중ㆍ이원욱ㆍ김해영ㆍ이재정ㆍ변재일ㆍ 이춘석·최운열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유동수·김병욱·박찬대·정성호· 윤관석 · 민홍철 · 심기준 · 박정 · 김영호 · 고용진·신창현·추미애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임종성·윤관석·정동영·신창현· 소병훈 · 안호영 · 이용득 · 이찬열 · 김두관 · 이동섭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정갑윤·이종명·곽상도·성일종· 이채익 · 최연혜 · 박맹우 · 신상진 · 김석기 · 문진국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권미혁·박범계·김정우·신창현· 최도자 · 추미애 · 정춘숙 · 손혜원 · 어기구 · 박선숙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백혜련·김영호·박광온·윤관석· 신창현·김정우·원혜영·박찬대·김성수· 박정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김경진·윤영일·이용주·장정숙· 박주현·정동영·황주홍·박지원·최경환(평)· 장병완·정인화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김경진·윤영일·이용주·장정숙· 박주현·정동영·황주홍·박지원·최경환(평)· 장병완·정인화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김경진·윤영일·이용주·장정숙· 박주현·정동영·황주홍·박지원·최경환(평)· 장병완·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김영우·유승민·하태경·주호영· 정병국·송기헌·김진태·황영철·김성원· 염동열 의원 발의)

2월 1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이철희·기동민·김영호·김정우· 김종대·노웅래·박정·심기준·윤관석· 임종성·정성호·최도자·한정애·유동수 의원 발의)

2월 1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이종명·김규환·신상진·이정현· 김성찬·박성중·원유철·문진국·장석춘· 김중로·정갑윤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김기선·이철규·장석춘·최교일· 이장우·권석창·김도읍·김규환·곽대훈· 원유철·함진규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임종성·윤관석·정동영·신창현· 소병훈·안호영·이용득·이찬열·김두관· 이동섭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임종성·안호영·소병훈·신창현· 강훈식·민홍철·조승래·이찬열·김두관· 이동섭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백혜련·강병원·임종성·김영호· 박광온·이종걸·정성호·윤관석·신창현· 김정우·박재호·원혜영·고용진·박찬대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위성곤·이학영·김철민·신창현·이용득·이철희·이개호·백혜련·고용진· 강병원·문희상·정재호·송옥주·이수혁· 제윤경·노웅래·윤후덕·원혜영·민병두· 임종성·홍영표 의원 발의)

2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백혜련·강병원·임종성·김영호· 박광온·이종걸·윤관석·신창현·박찬대· 정동영·민홍철·김성수·박정 의원 발의)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김수민·채이배·김삼화·김경진·황주홍·김한표·김중로·최도자·하태경· 신용현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권미혁·박찬대·신창현·최도자· 추미애·정춘숙·손혜원·어기구·박선숙· 양승조 의원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백혜련·인재근·강병원·정춘숙· 윤호중·이학영·윤영일·박광온·이종걸· 홍익표·이춘석·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김상희·강병원·강훈식·권미혁· 기동민・김민기・김한정・노웅래・문희상・ 박경미·박정·송옥주·어기구·이훈· 정춘숙·제윤경·조승래·한정애 의원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신보라·김성원·주광덕·함진규· 이철규・정유섭・장석춘・송희경・이양수・ 김종석 · 박대출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김관영·이찬열·주승용·권은희· 이동섭 · 최도자 · 윤관석 · 심상정 · 유의동 · 하태경·박주선·박주현 의원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신보라·김성원·주광덕·함진규· 이철규・정유섭・장석춘・송희경・이양수・ 김종석 · 박대출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2일 화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송희경·정갑윤·김정재·박맹우· 김경진 · 김종석 · 강석호 · 박성중 · 김용태 · 성일종 의원 발의)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박찬우·이명수·김태흠·김선동· 박덕흠 · 김용태 · 이은권 · 김재원 · 추경호 · 박성중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박찬우·이명수·김태흠·김선동· 박덕흠 · 김용태 · 이은권 · 추경호 · 박성중 · 원유철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유민봉·강석호·조훈현·김승희· 서청원 · 장석춘 · 박인숙 · 이현재 · 송희경 · 이종명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신원조사기본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강석호·김정재·이완영·임이자· 원유철 · 정유섭 · 이헌승 · 문진국 · 윤상직 · 송희경 의원 발의)

2월 12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박완주·민홍철·김영호·김민기· 이철희 · 김정우 · 전혜숙 · 윤관석 · 박정 · 노웅래 의원 발의)

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신상진·이종명·정갑윤·최도자· 정우택・나경원・정성호・유동수・송희경・ 문진국·전희경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박선숙·장정숙·오세정·이찬열· 이동섭・김광수・최도자・정성호・박지원・ 유영일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박선숙·장정숙·이찬열·이동섭· 김광수 · 최도자 · 정성호 · 박지원 · 김관영 · 정인화ㆍ채이배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박선숙·장정숙·이찬열·이동섭· 김광수 · 최도자 · 정성호 · 박지원 · 김관영 · 윤영일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박선숙·장정숙·윤영일·박지원· 김관영ㆍ기동민ㆍ인재근ㆍ이찬열ㆍ박주현ㆍ 채이배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송옥주·박정·전혜숙·신창현· 박찬대 · 이정미 · 유동수 · 김병욱 · 김정우 · 한정애・윤관석・강병원・서형수・홍영표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이종구·이은재·장제원·홍일표·

김재경·홍철호·김영우·박성중·권성동· 이진복·강석호·김무성·강길부·주호영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추경호·이현재·엄용수·조경태· 안상수·정종섭·박찬우·金成泰·김승희· 이만희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김경협·유동수·정성호·임종성· 전해철·민병두·유승희·강병원·홍의락· 안민석·문희상·신창현·박정·박재호· 정재호·노웅래·강훈식·어기구·김한정· 김종민·박광온·김정우·이원욱·서영교· 최운열·이수혁·박완주·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노웅래·장정숙·정동영·윤관석· 이수혁·안민석·송기헌·박정·송옥주·

유은혜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김경협·유승희·강병원·안민석· 신창현·문희상·김영호·박재호·정재호· 강훈식·어기구·김한정·김종민·박광온· 김병욱·박정·이원욱·유동수·전해철· 서영교·최운열·이수혁·박완주·고용진· 홍영표·심재권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김승희·김상훈·김명연·강석진· 이종명·추경호·윤재옥·한선교·김석기· 윤영석·박맹우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김종대·심기준·정성호·민홍철· 김중로·황주홍·김영호·이수혁·심상정· 윤소하·추혜선·노회찬·서영교·이정미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이철희·김영호·박정·최도자·

김종대·노웅래·윤관석·한정애·김정우· 심기준·정성호·임종성·기동민·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박인숙·유승민·지상욱·하태경· 김성원·김종회·정동영·이명수·김석기· 정병국 의원 발의)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이종걸·이철희·박용진·민홍철· 박찬대·김정우·심기준·백혜련·김병관· 민병두 의원 발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이종걸·이철희·박용진·민홍철· 박찬대·김정우·심기준·백혜련·김병관· 민병두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인재근·소병훈·박정·이인영· 윤관석·정춘숙·김영진·김상희·유은혜· 전혜숙·윤소하·오제세 의원 발의)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인재근·소병훈·박정·이인영· 윤관석·정춘숙·김영진·김상희·유은혜· 전혜숙·윤소하·오제세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인재근·소병훈·박정·이인영· 윤관석·정춘숙·김영진·기동민·김상희· 유은혜·전혜숙·윤소하·오제세·남인순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인재근·소병훈·박정·이인영· 윤관석·정춘숙·김영진·기동민·김상희· 유은혜·전혜숙·윤소하·오제세·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송옥주·박정·이용득·전혜숙· 신창현 · 박찬대 · 이정미 · 유동수 · 김병욱 · 한정애 · 윤관석 · 강병원 · 서형수 · 홍영표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송옥주·박정·전혜숙·신창현· 박찬대 · 이정미 · 유동수 · 김병욱 · 김정우 · 한정애 · 윤관석 · 강병원 · 서형수 · 홍영표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송옥주·박정·이용득·전혜숙· 신창현 · 박찬대 · 이정미 · 유동수 · 김병욱 · 김정우·한정애·윤관석·강병원·서형수· 홍영표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최도자・주승용・황주홍・남인순・ 김삼화 · 김승희 · 이동섭 · 이찬열 · 권은희 · 김광수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정갑윤·성일종·이채익·최연혜· 조훈현 · 김석기 · 박맹우 · 이종명 · 송희경 · 이진복・金成泰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안호영·임종성·김상희·이석현· 이용호・최인호・강훈식・이원욱・송영길・ 김현권·어기구·제윤경·전현희 의원 발의)

(2018. 2. 12. 박병석·박경미·윤관석·박찬대· 박정 · 원혜영 · 신창현 · 김중로 · 민홍철 · 김영호 · 전재수 · 김정우 · 고용진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2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박선숙·오세정·김광수·채이배· 이찬열 · 김관영 · 신용현 · 박지원 · 장정숙 · 윤영일 의원 발의)

2월 13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부겸·정동영·인재근·이찬열· 심기준 · 김영호 · 원혜영 · 민홍철 · 김민기 · 변재일 · 김정우 · 신창현 · 정성호 · 손금주 · 오세정 • 박정 • 윤관석 • 김상희 • 고용진 • 임종성 의원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부겸·정동영·인재근·이찬열· 심기준 · 김영호 · 원혜영 · 민홍철 · 김민기 · 변재일 · 김정우 · 신창현 · 정성호 · 손금주 · 오세정 • 박정 • 윤관석 • 김상희 • 고용진 • 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 수사의뢰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및 이 사건의 검찰수사 관련 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2018. 2. 13. 노회찬·심상정·윤소하·김종대· 이정미 · 박주현 · 추혜선 · 이철희 · 김종훈 · 김영호 · 서형수 의원 발의)

2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성원・경대수・김명연・金成泰・ 김한표・박인숙・이양수・이은권・이헌승・ 정유섭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3. 김성원・경대수・김명연・金成泰・ 김한표・박인숙・이양수・이은권・이헌승・ 정유섭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성원・김한표・金成泰・박인숙・ 이양수 · 정유섭 · 김명연 · 이헌승 · 이은권 · 경대수 의원 발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3. 김성원・경대수・김명연・金成泰・ 김한표 · 박인숙 · 이양수 · 이은권 · 이헌승 · 정유섭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성원・경대수・김명연・金成泰・

김한표·박인숙·이양수·이은권·이헌승· 정유섭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성원·경대수·김명연·金成泰・김한표·박인숙·이양수·이은권·이헌승·정유섭 의원 발의)

이상 6건 2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채이배·이동섭·김수민·오세정· 민병두·김현아·박주현·김관영·김삼화· 신용현·강병원 의원 발의)

2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변재일·윤호중·이석현·홍익표· 김영호·신경민·금태섭·유은혜·김병욱· 고용진 의원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변재일·윤호중·이석현·홍익표· 김영호·신경민·금태섭·유은혜·김병욱· 고용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제윤경·김정우·김종대·남인순· 민홍철·박찬대·신창현·심기준·안호영· 윤관석·전재수·정성호·한정애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민기·손혜원·조승래·김상희· 신창현·김경협·박경미·노웅래·전재수· 김영호·윤관석·김정우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민기·손혜원·강병원·조승래· 김상희·신창현·김경협·박찬대·노웅래· 전재수·고용진·윤관석·김영호·김정우 의원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송옥주·박정·윤소하·박찬대· 고용진·조승래·이원욱·백혜련·임종성· 민병두·신경민·김성수·윤관석·박영선· 노웅래·김삼화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이철희·김영호·김종대·노웅래· 윤관석·한정애·심기준·유동수·정성호· 기동민 의원 발의)

2월 1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3. 박지원·조배숙·김경진·김종회· 장정숙·이상돈·황주홍·박주현·윤영일· 이용주·유성엽·최경환(평)·김광수·천정배· 정인화·정동영·장병완 의원 발의)

2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민기·손혜원·강병원·조승래· 김상희·신창현·김경협·박경미·노웅래· 전재수·고용진·윤관석·김영호·김정우· 김병욱 의원 발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인(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이개호·노웅래·김현권·김철민· 김정우·주승용·민홍철·박정·위성곤· 어기구·김종회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이개호·노웅래·김현권·김철민· 김정우·주승용·민홍철·박정·위성곤· 어기구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어기구·이훈·유동수·전해철·이수혁·노웅래·기동민·박정·김병욱·김상희·김철민·이용득·이원욱 의원 발의)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정춘숙·백혜련·김상희·강병원· 남인순·김정우·원혜영·박남춘·유은혜· 박정·박찬대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3. 정춘숙·백혜련·김상희·강병원·

남인순 · 원혜영 · 박남춘 · 유은혜 · 박정 · 윤소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3. 유의동·김관영·하태경·오신환· 이명수 · 이동섭 · 곽대훈 · 박인숙 · 성일종 · 홍철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3. 김민기·강병원·조승래·김상희· 김경협 · 이춘석 · 박찬대 · 신창현 · 노웅래 · 전재수 · 고용진 · 윤관석 · 김영호 · 김정우 · 김병욱 의원 발의)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3. 문진국·신상진·김현아·임이자· 이종명 · 정갑윤 · 김용태 · 경대수 · 주광덕 · 성일종 · 송희경 · 김석기 · 윤한홍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최도자·이동섭·김수민·김관영· 박찬대 · 신상진 · 오세정 · 김광수 · 민홍철 · 추혜선 · 하태경 · 김중로 · 주승용 · 조배숙 · 손금주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신경민·제윤경·변재일·신창현· 박정 · 안규백 · 윤관석 · 이수혁 · 전현희 · 김정우 · 위성곤 · 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수민·손금주·채이배·오세정· 김삼화 · 김경진 · 황주홍 · 김한표 · 김중로 · 이철희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민기·손혜원·강병원·조승래· 김상희 · 신창현 · 김경협 · 이춘석 · 노웅래 · 전재수 · 윤관석 · 김영호 · 김정우 · 김병욱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 2. 13.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유승희·권미혁·김두관·김철민· 문희상 · 박경미 · 송옥주 · 신창현 · 윤후덕 · 원혜영·이수혁·정재호·최인호 의원 발의) 2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황주홍·김중로·장정숙·이찬열· 김수민 · 김경진 · 이동섭 · 윤영일 · 정인화 · 정동영 · 위성곤 · 유성엽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민경욱·신상진·정태옥·성일종· 이종배 · 문진국 · 정갑윤 · 김명연 · 윤재옥 · 송희경·서청원·김도읍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변재일·이학영·박홍근·윤호중· 홍익표 · 전혜숙 · 이석현 · 고용진 · 유승희 · 김병욱·김성수·신경민·금태섭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황주홍·장정숙·이찬열·김수민· 김종회 · 김경진 · 이동섭 · 윤영일 · 정동영 · 유성엽 의원 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변재일·이학영·박홍근·윤호중· 홍익표 · 전혜숙 · 이석현 · 고용진 · 유승희 · 김병욱·김성수·신경민·금태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워회에 회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황주홍·장정숙·이찬열·김수민· 김종회 · 김경진 · 이동섭 · 윤영일 · 정동영 · 유성엽 의원 발의)

2월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조승래·김민기·김태년·안규백· 노웅래 · 전재수 · 이석현 · 임종성 · 원혜영 · 안민석·제윤경·김해영·유은혜·백재현·

김병관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정재호·신경민·서영교·전해철· 김종민·이재정·이춘석·전재수·박홍근· 민병두 의원 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백혜련·오영훈·정성호·최인호· 박찬대·금태섭·이철희·위성곤·박지원· 양승조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유승희·권미혁·김두관·김철민· 노웅래·문희상·박경미·송옥주·신창현· 윤후덕·원혜영·이수혁·정재호·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박정·강병원·한정애·윤관석· 이개호·전재수·인재근·박찬대·김정우· 유동수·노웅래·박주선·심재권 의원 발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신상진·강효상·이철규·장석춘· 김성원·신보라·박대출·홍문표·주호영· 성일종 의원 발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이훈·남인순·김정우·신창현· 김영호·송옥주·박정·심재권·조정식· 권칠승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윤종필·조훈현·원유철·유재중·최도자·임이자·김명연·강길부·박덕흠·이종배 의원 발의)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송옥주·강병원·고용진·김병욱· 김상희·김성수·김영호·김현권·박찬대· 서형수·이용득·이원욱·정성호·진선미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송옥주·강병원·고용진·김병욱· 김상희·김성수·김영호·김현권·박찬대· 서형수·이용득·정성호·진선미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황주홍·장정숙·이찬열·김수민· 김종회·김경진·이동섭·윤영일·정동영· 유성엽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김현권·김영호·김종회·김철민· 박남춘·박주민·박완주·박재호·설훈· 안호영·어기구·위성곤·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정동영·박지원·천정배·노웅래· 윤관석·채이배·장정숙·조배숙·김종회· 장병완·황주홍 의원 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백혜련·오영훈·정성호·최인호· 이춘석·박찬대·금태섭·고용진·위성곤· 박지원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백혜련·김삼화·신창현·윤관석· 김정우·김중로·정동영·손금주·김영호· 금대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김수민·이동섭·김중로·신용현· 김삼화·김종회·황주홍·김광수·권은희· 이찬열 의원 발의)

2월 1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김경진·최도자·오세정·손금주· 정동영·황주홍·김수민·윤영일·박지원· 장정숙 의원 발의) 2월 19일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박인숙·정춘숙·정성호·이명수· 김세연 · 정병국 · 김성원 · 강석진 · 김명연 · 장정숙 의원 발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9. 유승희·금태섭·김경진·김상희· 김한정 · 문희상 · 민홍철 · 박재호 · 변재일 · 신창현 · 우상호 · 유은혜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김수민 · 이동섭 · 김중로 · 신용현 · 김삼화・김관영・황주홍・김광수・권은희・ 이찬열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김승희·김상훈·이명수·강석진· 이완영 · 김석기 · 송희경 · 문진국 · 권성동 · 신보라 · 곽대훈 의원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정춘숙·김상희·강병원·남인순· 김정우 · 원혜영 · 박남춘 · 유은혜 · 박정 · 박찬대 · 인재근 · 이철희 의원 발의)

청년기본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채이배·김관영·박선숙·권은희· 이동섭 · 김수민 · 오세정 · 신용현 · 김삼화 · 김동철 · 김중로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9. 김도읍・성일종・최연혜・김규환・ 이채익 · 강길부 · 유의동 · 윤영석 · 민경욱 · 박맹우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9. 김도읍·성일종·최연혜·김규환· 이채익 · 강길부 · 유의동 · 윤영석 · 민경욱 · 박맹우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권은희·최도자·이찬열·이동섭· 김삼화 · 주승용 · 김수민 · 김관영 · 오세정 · 김동철 의원 발의)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이학영·윤영일·남인순·변재일· 유호중 · 한정애 · 김현권 · 이원욱 · 이춘석 · 최인호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백혜련・오영훈・정성호・최인호・ 이춘석 · 박찬대 · 고용진 · 위성곤 · 박지원 · 김현권 의원 발의)

이상 11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18. 2. 20. 정무위원장 제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8. 2. 20.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 2. 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2018. 2. 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8. 2. 20.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2건 2018. 2. 20.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8. 2. 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2. 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3건 2018. 2. 20.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8. 2. 20.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8. 2. 20.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2018. 2. 20. 의장 제의)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7일간)

○의안 심사

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 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 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김관영・민병두・제윤경・김동철・ 조배숙・이태규・이종걸・송희경・이동섭・ 주승용·박선숙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 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 이언주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 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 이언주 의원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 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 이언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1. 황주홍·이찬열·이동섭·박선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 유성엽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7. 5. 29. 손금주·송기석·김성식·박준영· 이동섭·박주현·장정숙·최경환(국)·이용주· 정인화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10. 23. 김성원·곽상도·박명재·박인숙· 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은권·정유섭· 홍문종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 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 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 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 이언주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

김병욱 · 박선숙 · 박정 · 윤관석 · 김영진 · 신창현 · 김정우 · 전혜숙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7. 김중로·황주홍·이언주·김종회· 박준영 · 이동섭 · 김광수 · 김삼화 · 장병완 · 신용현·채이배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 김병욱 · 박선숙 · 박정 · 윤관석 · 김영진 · 신창현 · 김정우 · 전혜숙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 김삼화 · 김경진 · 황주홍 · 이동섭 · 김종회 · 이언주 의원 발의)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정무위원장 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7. 11. 7. 박명재·박덕흠·원유철·강석호· 김광림 · 박성중 · 이학재 · 주호영 · 박맹우 · 김재원 · 경대수 · 이철우 · 김정재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 김도읍·김성원·이양수·강석진· 김명연 · 민경욱 · 김정재 · 이은권 · 전희경 · 정태옥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2. 10. 김관영·박용진·이동섭·이개호· 황주홍 · 김종회 · 변재일 · 이종걸 · 민홍철 · 장정숙 · 오세정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9. 29. 정부 제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2017. 3. 7. 정병국·이명수·박맹우·조경태· 김정재 · 정양석 · 정용기 · 장석춘 · 장제원 · 정운천 · 이종구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 발의)

(2017. 8. 9. 김광림·김석기·강석호·이완영· 최교일 · 이정현 · 김종석 · 김상훈 · 이만희 · 김명연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1. 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 김종대 · 이정미 · 윤종오 · 김종훈 · 김경협 · 황주홍·박찬대·채이배·최도자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7. 1. 18. 김정재·오신환·박대출·홍철호· 박명재 · 이헌승 · 박완수 · 이철우 · 강석호 · 조훈현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金成泰・안상수・박덕흠・유기준・ 최연혜 · 이장우 · 정유섭 · 나경원 · 김승희 · 함진규·윤종필·전희경·김종석·정진석· 김규환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1. 2. 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 안규백 · 신경민 · 이춘석 · 김해영 · 전혜숙 · 박주민 의원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7. 6. 23. 조승래 · 이용득 · 신경민 · 민홍철 · 오영훈 · 고용진 · 김민기 · 송옥주 · 신동근 · 심재권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7. 8. 7. 유은혜·김병욱·김민기·조승래· 신경민 · 정춘숙 · 정성호 · 민홍철 · 윤소하 · 원혜영・손혜원・소병훈・김정우・송옥주・ 박정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염동열·함진규·권석창·조훈현·이종 배ㆍ이양수ㆍ문진국ㆍ김진태ㆍ김명연ㆍ이채 익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김해영·박광온·윤호중·박재호·

박용진 · 권칠승 · 신경민 · 최인호 · 백혜련 · 전재수 · 강병원 · 서영교 · 이찬열 · 김영춘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22. 김병욱·유은혜·김성수·박정· 김광수・윤호중・조승래・전혜숙・윤후덕・ 강훈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2017. 9. 13. 문희상·이학영·이동섭·민병두· 김종민 · 김해영 · 윤호중 · 안민석 · 이춘석 · 유동수 · 안규백 · 정종섭 · 설훈 · 신창현 · 이인영 · 김경협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대표발의)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8. 28. 정부 제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6. 9. 2. 원혜영·정갑윤·도종환·정인화· 윤영일 · 안규백 · 손혜원 · 윤후덕 · 이언주 · 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홍익표·박정·서영교·김정우· 이재정 · 박홍근 · 인재근 · 유은혜 · 안규백 · 권칠승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워 대표발의)

(2017. 7. 13. 김중로・장정숙・김종회・최경환(국)・ 이동섭 · 박지원 · 윤영일 · 유동수 · 송기석 · 신용현·정인화·김관영 의원 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박경미·김경협·김민기·진선미· 김해영 · 김종대 · 변재일 · 조승래 · 서영교 · 도종환 · 안민석 · 김관영 · 유은혜 · 이개호 · 손혜원 의원 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14. 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

김경진 · 정인화 · 이양수 · 김종회 · 김관영 · 유성엽 의원 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29. 정부 제출)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8. 21. 정부 제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15. 박정·인재근·김철민·노웅래· 윤후덕 · 서형수 · 유동수 · 박재호 · 윤관석 · 김병욱 · 박주민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6. 23. 이재정·기동민·김영진·김정우· 김해영 · 남인순 · 소병훈 · 윤관석 · 윤호중 · 이춘석ㆍ이학영ㆍ정재호ㆍ진선미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9. 6. 이명수·김성찬·권석창·이정현· 박덕흠 · 함진규 · 경대수 · 박인숙 · 성일종 · 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7. 28. 윤상현·곽대훈·김성원·김정재· 박찬우 · 유기준 · 이명수 · 이헌승 · 정태옥 · 추경호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1. 11. 박주민·이훈·김철민·전해철· 송영길 · 이개호 · 표창원 · 손혜원 · 박광온 · 김현권 · 이재정 · 박남춘 · 신경민 · 위성곤 · 남인순·제윤경·박범계 의원 발의)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7. 2. 28. 서영교·진선미·위성곤·추혜선· 전재수 · 손혜원 · 박정 · 유승희 · 홍의락 · 윤종오 · 김종훈 · 김종대 · 노회찬 · 이정미 · 채이배 · 박주민 · 김병관 · 김상희 · 김경진 · 어기구 의원 발의)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7. 6. 2. 주승용·최도자·정동영·장정숙· 김경진 · 정인화 · 천정배 · 황주홍 · 노웅래 · 김관영·이용호·윤영일·강창일 의원 발의)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7. 6. 23. 김현권·박범계·표창원·제윤경· 이훈 · 위성곤 · 전해철 · 박정 · 송옥주 · 유승희 · 이용득 · 민병두 · 송기헌 · 이재정 · 어기구 · 박재호 · 김상희 · 김영호 · 신창현 · 진선미 · 박주민 · 김철민 · 소병훈 · 홍문표 · 홍의락 · 김한정 · 설훈 · 박선숙 · 김병욱 의원 발의)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7. 7. 12. 윤영일·천정배·정인화·황주홍· 김중로 · 박주현 · 김종회 · 강창일 · 정재호 · 신용현 · 이동섭 · 박지원 · 송기석 · 김삼화 · 장정숙·최경환(국)·김광수 의원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위성곤·이원욱·김현권·표창원· 이개호・김철민・박홍근・황주홍・김한정・ 정인화 · 김현미 · 이찬열 · 강창일 · 김영춘 의원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7. 7. 황주홍·김중로·김광수·윤영일· 박준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주호영ㆍ김종회ㆍ 이용주 의원 발의)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박정·김병욱·윤후덕·강창일· 김해영 · 이찬열 · 어기구 · 김병관 · 김철민 · 신경민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7. 6. 22. 김광수・김중로・황주홍・최도자・ 이동섭ㆍ박주현ㆍ천정배ㆍ김삼화ㆍ김관영ㆍ 유성엽·김종회 의원 발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7. 1. 20. 이채익·함진규·김도읍·이현재· 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 주호영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김상훈·강석진·곽대훈·송희경· 박성중ㆍ정태옥ㆍ김규환ㆍ김승희ㆍ유재중ㆍ 최연혜 의원 발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 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 김영진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7. 2. 15. 김상희・정춘숙・윤소하・기동민・ 양승조 · 오제세 · 권미혁 · 이학영 · 인재근 · 박홍근ㆍ이원욱ㆍ백혜련ㆍ박광온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2016. 11. 16.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 박정 · 전혜숙 · 김종회 · 김정우 · 서영교 · 어기구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

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 백혜런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정춘숙·김병욱·양승조·권미혁· 김상희·윤소하·김종대·민홍철·신창현· 김영호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7. 7. 김학용·백승주·이종명·박맹우· 김종태·이학재·김성태·김성원·경대수· 권석창·이양수·강석호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2017. 7. 27. 윤종필·김승희·김상훈·조훈현· 박덕흠·이종배·나경원·원유철·임이자· 김명연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8. 7. 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 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신창현· 표창원·이수혁·송옥주·김성수·설훈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8. 8. 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 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표창원· 이수혁·송옥주·설훈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8. 28. 정부 제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 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 백혜련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 발의)

(2017. 9. 6. 김종회·정인화·김병욱·주승용· 황주홍·박선숙·박주현·김성찬·신용현· 위성곤·김중로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8. 오제세·박정·민홍철·채이배· 권미혁·홍의락·기동민·인재근·강창일· 김수민·김두관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6. 7. 15. 박광온·김두관·김해영·김영주· 권칠승·이훈·오제세·문미옥·전혜숙· 백혜련·김영진·이원욱·김부겸·민병두· 김태년·김진표·김정우·김현미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5. 인재근·소병훈·유은혜·기동민· 박남춘·김영진·우원식·윤소하·이인영· 윤관석·신경민·문미옥·이철희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16. 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 박남춘·위성곤·황주홍·변재일·박홍근· 박정·윤관석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 기동민·김영호·위성곤·정성호· 인재근·김병욱·김정우·이철희·박재호· 이재정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 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 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 백혜런 의원 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7. 8. 22. 이진복·성일종·조훈현·이종구·김한표·윤영석·유의동·김성원·이정현· 이현재 의원 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7. 9. 11. 이학재·박명재·김현아·신상진· 신보라·문진국·김세연·주호영·하태경· 김관영·박덕흠 의원 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정춘숙·김병욱·양승조·권미혁· 김상희·윤소하·김종대·민홍철·신창현· 김영호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2017. 2. 22. 강석진·이완영·유기준·장석춘· 윤한홍·함진규·김태흠·김순례·송희경· 원유철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3. 29. 김승희·최연혜·김종회·박덕흠· 정태옥 · 이우현 · 김광림 · 추경호 · 정유섭 · 정용기 · 이명수 · 김순례 · 강석진 · 문진국 · 박명재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7. 8. 17. 양승조·김상희·이학영·정춘숙· 전혜숙 · 김현권 · 윤소하 · 민병두 · 김정우 · 안호영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17. 8. 23. 김상훈・송석준・강석진・윤종필・ 김광림 · 유재중 · 김명연 · 성일종 · 김승희 · 김규환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7. 9. 7. 양승조·김해영·정춘숙·정성호· 윤소하 · 천정배 · 안호영 · 권미혁 · 김정우 · 손혜원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 황주홍 · 박홍근 · 박정 · 윤호중 · 김관영 · 양승조·인재근·김상희·위성곤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7. 8. 31. 강석진·김상훈·김승희·김명연· 윤한홍ㆍ성일종ㆍ함진규ㆍ김순례ㆍ송희경ㆍ 이완영 의원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6. 12. 16. 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 박남춘 · 황주홍 · 변재일 · 박홍근 · 박정 · 윤관석 의원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 황주홍 · 박홍근 · 박정 · 윤호중 · 김관영 · 양승조·인재근·김상희·위성곤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9. 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 이정미・김종대・소병훈・최도자・기동민・ 장정숙 · 전혜숙 · 김영호 · 김정우 · 정춘숙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7. 27. 정부 제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8. 17. 양승조·김상희·이학영·정춘숙· 전혜숙 · 김현권 · 윤소하 · 민병두 · 김정우 · 안호영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9. 7. 양승조·김해영·정춘숙·정성호· 윤소하 · 천정배 · 안호영 · 권미혁 · 김정우 · 손혜원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8. 송석준·엄용수·정성호·김성태· 유기준 · 송희경 · 소병훈 · 김상훈 · 나경원 · 유동수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7. 1. 12. 성일종·이명수·민경욱·신상진· 김도읍・이은재・김수민・문진국・김성찬・ 주호영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7. 3. 22. 이종명·신보라·김용태·장석춘· 金成泰・이군현・김현아・김선동・송희경・ 유민봉 · 김석기 · 김정재 · 조훈현 · 원유철 · 정진석 · 최연혜 의원 발의)

(이상 3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9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2017. 5. 31. 민홍철·이완영·조배숙·이찬열· 최인호 · 박재호 · 김현권 · 김현아 · 이개호 · 임종성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27. 원혜영·김정우·신창현·설훈· 송옥주·김경협·서영교·안호영·이찬열· 조승래 의원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7. 8. 30. 전현희·김정우·주승용·한정애· 신창현 · 윤관석 · 임종성 · 안규백 · 안호영 · 이원욱 의원 발의)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 안규백·전현희·최인호·박홍근· 민홍철·윤관석·정성호·이춘석·이원욱· 안호영·박찬우·윤호중·백재현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8. 31. 주호영·이종구·정양석·김현아· 김세연·황주홍·이학재·이완영·정병국· 김영우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7. 9. 5. 이원욱·김영진·김상희·안호영· 김현권·정춘숙·윤호중·이학영·강훈식· 유관석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7. 9. 14. 이원욱·윤관석·윤호중·정춘숙· 이학영·전현희·황희·안호영·김현권· 임종성·민홍철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2017. 9. 28. 정종섭·김석기·김성원·김재원· 김정재·김학용·박명재·송석준·윤상직· 정태옥·조훈현·주광덕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 발의)

(2017. 2. 13. 윤영일·황주홍·신용현·주승용· 金成泰·홍철호·강창일·조배숙·윤관석· 김종회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2017. 9. 5. 이원욱·김영진·김상희·안호영·김현권·정춘숙·윤호중·이학영·강훈식· 윤관석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8. 안규백·전현희·최인호·김해영· 이동섭·이찬열·설훈·윤관석·전혜숙· 조정식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7. 8. 28.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7. 8. 28. 정부 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7. 10. 27. 신용현·윤종필·조배숙·김삼화· 김종회·권은희·박지원·송기석·이동섭· 윤영일·추혜선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7. 8. 28. 정부 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7. 10. 10. 전해철·김성수·김민기·김영호· 윤관석·신창현·박경미·민홍철·원혜영· 김정우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11. 8. 남인순·신창현·김상희·정성호· 윤관석·한정애·소병훈·인재근·서영교· 이학영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7. 7. 31. 김민기·강훈식·권미혁·김병욱·김정우·노웅래·민홍철·박남춘·박정·서영교·손혜원·신창현·오영훈·유은혜·정성호·제윤경·조승래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 9. 28. 고용진·강훈식·권칠승·김병관· 김병욱·김종회·김해영·신창현·윤호중· 이춘석·임종성·정성호·조승래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3. 27. 나경원·송희경·윤종필·엄용수· 성일종·염동열·곽대훈·金成泰·원유철· 김순례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5. 남인순·박주현·정춘숙·서영교· 권미혁·조승래·박정·박경미·김종민· 추혜선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4. 신용현·김삼화·김종회·김수민·

조배숙 · 박주현 · 최도자 · 이동섭 · 박경미 · 손금주·박인숙·오세정·정춘숙·윤종필· 송기석·장병완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1. 3. 정부 제출)

(이상 1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추천의뢰서 제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8. 2. 12. 대통령 제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추천의 건

(2018. 2. 19.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의 의사상자 불인정에 관한 질문서

(2018. 2. 12. 천정배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8. 2. 8. 대법원장 제출)

사법부 인사전횡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8, 2, 14, 대법원장 제출)

검찰 내 성폭력 의혹 및 법무부 장관의 해명번복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8. 2. 19. 정부 제출) (이상 4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해양생태계보전 · 관리기본계획 집행결과보고서

(2018. 2. 8. 정부 제출)

2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8, 2, 8, 한국은행 제출)

2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2017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성과 및 2018년 향후계획

(2018. 2. 12. 정부 제출)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송부

○통지

국회의원 송기석·박준영 대법원 판결 확정 통지

2018. 2. 8. 대법원으로부터 송기석·박준영 의원에 대한 판결이 2월 8일 자로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국회의원 박찬우 대법원 판결 확정 통지

2018. 2. 13. 대법원으로부터 박찬우 의원에 대한 판결이 2월 13일 자로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18. 2. 8.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기석 · 박준영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게 통지함

2018. 2. 13.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찬우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 통지

2018.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 통지가 있었음

명칭	합당한 구 정당	연월일
바른미래당	국민의당・바른정당	2018. 2. 19.

○본회의장 의석표

